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61-01

INVESTMENT & BUSINESS GUIDE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INVESTMENT & BUSINESS GUIDE

 미 안 마 투자법제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

미얀마 투자법제

發刊辭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과 한-ASEAN FTA를 체결·발효하고 꾸준히 교역관계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한국의 5대 교역 상대였던 ASEAN은 이제 중국에 이은 2대 교역 경제권으로 급부상하였고, 미국에 이은 2대 해외 투자 대상 지역이자 중동 다음으로 큰 한국의 2대 건설 수주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중 미얀마는 한반도의 3배에 이르는 넓은 국토, 풍부한 천연 자원에 기반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서, 문맹률이 3~4%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 수준이 높고, 과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문화 수준을 자랑하던 곳입니다. 특히 2011년 개혁·개방 조치 이후 미얀마는 세계 각국 기업의 각축장이 될 정도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비록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아픈 기억을 안겨준 나라이지만, 2009년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파트너십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후 양국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협상이 개시됨으로써 앞으로 미얀마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 미얀마로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본 비즈니스가이드 발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10년 중국진출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이드를 발간한 이래 지금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CIS 국가 등을 주제로 총 7권의 비즈니스가이드를 발간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비즈니스가이드도 미얀마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지법령 정보와 구체적 자문사례 등을 담은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미 미얀마에 진출하여 있거나 새로이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참고하고 알아두어야 할 지침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현지 법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비즈니스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증보해나가는 한편, 일본, 인도, 중남미, 중동국가 등에 대한 비즈니스가이드도 새롭게 발간할 예정입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집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로펌의 변호사 분들을 비롯하여 본서의 기획 및 발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국제법무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3. 1.

법무부장관



목 차

제1장 외국인투자법	12	가. 개인기업과 조합	28
1. 외국인 투자법제의 변화 및 개관	12	나. 회사의 종류	29
2.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13	다. 주식회사	29
3. 미얀마투자위원회(MIC)	14	3. 회사의 설립	30
4. 투자 분야	16	가. 회사 설립 일반	30
가. 투자허용분야	16	나. 35% 룰 (합작투자회사에서 외국인 지분 비율)	31
나. 투자제한분야	16	다. 영업허가	31
5. 투자 형태	17	라. 회사설립의 등록	31
6. 투자 절차	18	4. 회사의 기관과 사무실	31
가.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투자허가 절차	18	가. 주주총회	31
나. 영업허가 신청 절차	21	나. 이사	32
다. 회사 등록 절차	22	다. 사명과 등록사무실	32
7. 투자금 및 보험 요건	23	5. 주식의 배정과 이전	33
가. 투자금 요건	23	가. 주식의 배정	33
나. 보험 요건	23	나. 주식의 이전	33
8. 투자 인센티브	24	6. 감사제도	34
가. 조세 감면 혜택	24	제3장 노동법	35
나. 기타 인센티브 등	25	1. 주요 법령	35
다. 투자 인센티브 관련 유의사항	25	2. 유관 기관	37
9. 투자 보장	25	3. 채용	37
가. 투자 보장 일반	25	가. 현지인 고용	37
나. 외국환 거래 관련	26	나. 외국인 고용	38
10. 회계감사 및 청산	27	4. 임금	38
제2장 회사법	28	5. 근로조건	39
1. 미얀마의 회사 관련 법령	28	가.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39
가. 미얀마 회사법(1914)	28	나. 휴가 및 휴일	39
나. 특별회사법(1950)	28	다. 안전 및 보건	39
다. 기타 규정	28	6. 해고 및 퇴직금	40
2. 회사의 형태	28	7. 사회보장 및 산업재해보상	41

목 차

가. 사회보장제도	41	나. 관련 법규	55
나. 산업재해보상	41	3. 소득세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56
8. 노동분쟁조정	43	가. 구성	56
제4장 은행 및 금융 제도	44	나. 회계연도, 과세연도와 소득세 신고 납부 및 환급	56
1. 개관	44	다. 거주자인 외국인, 비거주자인 외국인	56
가. 국영 금융 기관	44	라. 소득세의 세목	57
나. 금융 관련 정부 조직	45	마. 세율	58
2. 은행 시스템	45	4. 법인에 대한 세금	60
3. 미얀마 중앙은행 (CBM)	46	5. 상업세	60
가. 미얀마 중앙은행의 기능과 의무	47	가. 상업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60
나. 미얀마 중앙은행이 수행 가능한 업무	47	나. 세율	61
다.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국환 송금 승인	48	6. 이중과세방지조약	62
4. 국영 은행	48	7. 인지세	62
가. 미얀마 경제은행(MEB)	48	8. 관련 법규에 의한 조세 감면 제도	63
나. 미얀마 무역은행(MFTB)	49	제6장 토지 제도	65
다.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	49	1. 외국인의 토지소유권 개관	65
5. 외국인의 계좌 개설 및 송금	49	2.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양도 제한	65
6. 미얀마 보험 공사	50	3. 토지사용권	66
7. 미얀마에서 은행 설립	50	4. 토지사용기간의 결정	67
8. 통화 및 외국환의 통제	51	5. 토지사용권 신청 방법 및 절차	67
가. 차트(Kyat)	51	6. 토지 사용 조건	68
나. 외국환거래증(FEC)	51	제7장 자금조달 및 담보거래	70
다. 외국환의 관리	52	1. 자금조달	70
라. 환율 관리	53	가.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MIC)	70
9. 은행 및 금융 제도의 변화 전망	53	나. 대출이자율	70
제5장 조세 제도	55	2. 담보권의 종류	70
1. 담당 기관	55	가. 저당권(mortgage)	70
2. 조세제도 일반	55	나. 질권	71
가. 조세 구조	55	3. 담보권의 등록	71

목 차

4.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제한	72	6. 중재 절차와 재판 절차의 관계	87
제8장 수출입 제도	74	가. 사법상의 절차	87
1. 수출입제도 개관	74	나. 재판 절차의 중지	87
가. 적용 법률	74	7. 미안마 중재 판정의 집행	87
나. 등록	74	8. 외국 판결 및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88
2. 수출입허가	74	가. 외국 판결의 집행	88
가. 수출허가	75	나.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88
나. 수입허가	75	9. 준거법 중재 장소 및 중재 언어	89
3. 수출입 금지 품목	77		
4. 수출입 절차	78		
가. 수출 절차	78		
나. 수입 절차	78		
5. 수출입을 위한 세관 절차	79		
가. 수입	79		
나. 수출	79		
6. 관세 환급	80		
7. ASEAN과 자유 무역 전망	80		
제9장 분쟁 해결 제도	82		
1. 법원 제도	82		
2. 중재 제도	84		
3. 중재 제기 기한 및 당사자의 사망 또는 파산	84		
가. 제소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의 준용	84		
나. 당사자의 사망 내지 파산	85		
4. 중재인 내지 심판인의 선임	85		
5. 중재 판정	86		
가. 중재 판정 기한 및 구속력	86		
나. 중재 판정의 수정	86		
다. 중재 판정의 환송	86		
라. 중재 판정의 취소	86		

제1장 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제의 변화 및 개관

미얀마는 1948년 독립주권국을 선포하였으나 영국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사법제도와 법률 실무를 그대로 운영하다가 1962년에 군부 독재와 함께 정치 체제를 사회주의로 전환하였다. 1988년 9월 정권을 잡은 국가 법질서 회복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는 시장 중심적인 경제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압승을 하였으나 군부로부터의 권력이양이 거부되고, 아웅산 수지의 가택 연금되는 등의 사정으로, 1962년부터 시작된 미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는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와 이에 기초한 경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5월 제정된 미얀마 신 헌법(2008 Myanmar Constitution)에 따라 2010년 11월 총선이 실시 되었고, 2011년 1월 의회가 소집되었으며, 2011년 3월 민선정부가 출범하여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군부 정권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미얀마 투자 관련 법제들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주요한 15개의 새로운 법안과 수많은 개정 법률안들이 2011년 국회 하원 2차 회기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의 법률안들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제안된 것이며 조만간 미얀마 국회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o.	법안 승인일	법 명	
1	2011. 9. 29.	Law Revoking the Revenue Law	Union Parliament Law No.1
2	2011. 9. 29.	Law Amending Myanmar Stamp Act	Union Parliament Law No.2
3	2011. 9. 29.	Law Amending the Commercial Tax Law	Union Parliament Law No.3
4	2011. 9. 29.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Union Parliament Law No.4
5	2011. 9. 29.	Law Amending the Court Fees Act	Union Parliament Law No.5
6	2011. 10. 5.	Law Amending the Union Election Commission Law	Union Parliament Law No.6
7	2011. 10. 11.	Labour Union Law	Union Parliament Law No.7

8	2011. 10. 18.	Law Amending the People's Parliament Election law	Union Parliament Law No.8
9	2011. 10. 18.	National Parliament Election Law	Union Parliament Law No.9
10	2011. 10. 18.	Law Amending the Division Regional or State Parliament Election Law	Union Parliament Law No.10
11	2011. 11. 4.	Law Amending the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Law	Union Parliament Law No.11
12	2011. 11. 21.	The Law Revoking the 1964 Law Defining the Fundamen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eople's Workers	Union Parliament Law No.12
13	2011. 11. 30.	Microfinance Law	Union Parliament Law No.13
14	2011. 12. 2.	Private Schools Registration Law	Union Parliament Law No.14
15	2011. 12. 2.	Peaceful Demonstration and Peaceful Grouping Law	Union Parliament Law No.15

2.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미얀마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은 (i)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시장 경제 지향적 시스템 채택, (ii) 민간 주체의 투자와 경제 활동 장려, (iii) 대외 무역과 외국인투자를 위한 경제개방 등이다.

시장 경제 지향적 시스템을 채택한 후, 미얀마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신 기술을 도입하며 천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1988. 11. 30. 미얀마 외국인투자법(Union of 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 이하 “MFIL”)을 제정하였다. 1988년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의 제정 목적은 i) 수출 장려와 확대, ii)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천연 자원 개발, iii) 첨단 기술 도입, iv)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생산 및 서비스 지원, v) 고용 기회 창출, vi) 에너지 절약 산업 개발, vii) 지역 개발 등이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조세 감면 및 투자 보장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얀마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에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고 투자허가를 받아야 한다. 1988년 12월 공포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절차규정(MFIL Procedures)은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따른 투자허가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절차규정 이외에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집행하는 투자 관련 법령으로 1994년 공포된 미얀마 시민투자법(Myanmar Citizens Investment Law) 및 관련 절차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미얀마 내국인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미얀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신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안(MFI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임대 제도 개선: 민간으로부터 토지 임대 가능, 임대 기간 조정 (최초 30년, 15년씩 2회 연장 가능)
- 세금 면제 혜택 확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미얀마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세금 감면 연장 가능
- 미얀마 정부와의 합작 투자 가능
- 외국인 투자 사업에 대한 불가피한 국유화의 경우 시장 가격에 따른 보상
- 현지인 고용: 미숙련근로자는 전원 현지인 고용 의무, 숙련근로자는 5년 내에 25%, 10년 내에 50%, 15년 내에 75% 현지인 고용 의무

3. 미얀마투자위원회(MIC)

현행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따르면,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최초의 승인 기관이다.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과 미얀마 시민투자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조직되었으며, 1994년 8월 3일 정부 공고 제7/94호로, 1999. 12.

3. 정부 공고 제59/99호로 각 개편된 바 있다.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선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 사업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이를 심사하여 투자허가를 발급한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의하면, 미얀마투자위원회(MIC)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국익을 증진시키고 현행 법률에 배치되지 않는 투자 계획 수용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재정 신용도, 경제성, 기술 적정성 평가
- 투자자에게 투자허가 발급, 허가 기간 연장 및 허가 조건 완화 · 수정
-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규정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제기하는 불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 외국인투자 현황 감독 및 평가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 규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 조직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따른 재정 업무를 담당할 은행 지정
-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안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8명의 장관이 위원을 맡고 있으며, 행정 업무 대부분은 국가 기획 · 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산하 투자기업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서 수행하고 있다. 2011년 9 월까지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무역위원회(Trade Council)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Union of Myanmar) 공고 제82/2011호로 개편된 후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상위 기관은 없다.

4. 투자 분야

가. 투자허용분야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1989년 5월 30일 외국인 투자가 행해질 수 있는 투자허용분야 목록을 미얀마투자위원회(MIC) 공고 제1/89호로 발표하였다. 이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 농업, 목축업, 어업, 임업, 광업
- 공업(식품, 섬유, 개인용품, 가정용품, 가죽 제품류, 운송 장비, 건축 자재, 펄프 제지, 화학약품, 화학 제품 및 제약품, 제철 및 제강, 기계류 및 설비)
- 건설업, 운송 및 정보 통신업, 무역업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분야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개별 사안에 따라 투자허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위 투자허용분야의 사업이더라도 아래 해당 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내외국인간 합작 투자 시의 지분을 제한, 외국인의 토지 사용 제한 및 내국 근로자 고용 의무 등 각종 의무가 있으므로 투자 시에 이러한 사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나. 투자제한분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 하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만, 아래 12개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1989년 3월 제정된 국영기업법에 따라 국영기업만이 그 사업 운영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내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다.

- 티크목 벌채, 국내 판매 및 수출
- 산림조성 및 관리. 단, 소규모 지역민들이 가정소비용으로 지역소유 장작 산림을 조성하는 것은 예외
- 석유 및 천연 가스 탐사, 추출, 판매, 생산

- 진주, 옥, 보석류 탐사, 추출, 수출
- 정부가 연구용으로 보존한 어장에서의 어류 · 새우 양식 및 생산
- 우편업 및 통신업
- 항공업 및 철도업
- 은행업 및 보험업
- 방송업
- 금속 탐사, 채굴, 정련, 수출
- 전기발전업. 단, 법에 의해 민간 투자 또는 합작 투자가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 안보 및 방위 관련 물품의 생산

다만, 국영기업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익을 위해 위 분야들에 대한 정부와의 합작투자나 일정 조건에 따른 민간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2개 사업 분야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서 위 12개 사업 분야에 대한 내외국인의 민간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 실제로 미얀마투자위원회는 은행업에 대한 내국인 투자를, 광업, 석유 및 천연 가스 추출업, 통신업, 항공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5. 투자 형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의하면, 단독투자나 합작 투자가 모두 가능하다. 단독투자의 경우 개인사업(sole proprietorship), 조합(partnership), 회사(limited company) 등의 형태가 가능한데 회사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합작파트너는 개인, 민간기업, 지역협동조합, 국영기업 등이 될 수 있고, 이 때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 자본의 35%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호텔과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는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이 허용되고, 천연 자원 탐사, 추출업에 대해서는 PSC(생산물분배계약) 방식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법인, 지사 및 대표 사무소 형태로 진출할 수 있다. 현지 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점은 본사를 대리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대표사무소는 영리활동은 할 수 없고, 시장 조사 및 홍보 등의 제한된 비영리 활동만 할 수 있다. 조세 측면에서는 영리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 형태인 현지 법인 및 지점에 대해서 검토될 수 있는데 현지 법인의 경우 25%의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반면, 외국법인의 지점은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형태를 결정할 때는 위와 같은 사항들이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6. 투자 절차

미얀마에서의 외국인투자 절차는 투자허가, 영업허가, 회사 등록 절차의 3단계로 구분된다.

가.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투자허가 절차

(1) 사업 계획서 제출

외국인 투자자는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따라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소정의 양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는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절차규정(MFIL Procedures)에 따라, 사업 계획서에 다음 사항들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투자자의 성명, 국적, 주소, 사업 형태, 회사 설립지 (합작투자형태라면,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및/또는 회사에 관한 동 사항)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
- 투자자 또는 합작투자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상업적, 재정적 현황 참고 자료
- 투자하려는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 업체에 관한 세부 사항
- 투자하려는 사업체 형태
- 합작투자라면, 파트너들의 투자 비율과 금액, 이익 배분 비율, 파트너들의 권리와 의무

- 회사의 수권 자본 총액, 지분 형태, 주주들에게 인수된 주식 수
 - 설립될 회사의 임원의 이름, 국적, 주소, 직위
 - 투자 대상 사업체의 자본 총액, 국내 및 외국 자본의 비율, 미얀마로 도입될 외국 자본의 총액, 다양한 유형의 외국 자본에 대한 평가액,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기간
 - 투자 기간, 건설 기간
 - 미얀마 내 투자 대상 지역 또는 장소
 - 생산과 판매에 사용할 기술과 체제
 - 사용할 에너지 유형과 양
 - 주요 기계, 장비, 원자재, 건설 기간 동안 사용될 유사한 자재들의 양과 가액
 - 필요한 토지의 유형과 지역
 - 기업의 연간 생산량과 가액, 서비스의 양과 가액
 - 회사 운영에 필요한 연간 외환 규모, 예상 외환 거래 규모
 - 연간 국내외 재화 판매량 및 가액, 국내외로부터의 고용 인원 수, 분류, 근무기간
 - 연간 매출, 연간 비용, 연간 순이익, 연간 투자액, 보상 기간, 기타 수익, 신규 고용기회 창출 전망 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 자료
- (나) 위 사업계획서와는 별도로 다음의 자료들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재정 신용도 관련 서류 (투자하려는 개인 또는 회사의 최근 회계 감사 보고서, 사업 및 재정 안정성을 보여주는 신용 조회 결과)
 - 영업상태에 관한 은행 추천서

- 회사 형태가 파트너십 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인 경우, 합작투자 계약서 및 회사 정관 초안
- 거래의 일부로 토지 임대나 필요한 경우이거나 BOT(건설-운영-양도)계약인 경우, 기본적인 계약서 초안
- 기타 관련 계약서 초안

(다) 투자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따른 조세 감면 혜택 신청을 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서 상세 심사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절차규정에 따라,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투자자의 재정 신용도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다.

- 외국인 투자자의 감사보고서 검토
- 미얀마 대외무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또는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의 해외 제휴은행에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에 대한 질의 요청
- 기타 추가 자료 요청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들을 검토한다.

- 연간 예상 순이익
- 연간 예상 외환 가득액, 연간 사업 운영자금
- 투자금 회수기간
- 고용 창출 효과

- 국가 소득 기여 정도
- 국내 및 해외 시장 상황
- 요구되는 국내 소비량
- 외국환 예금

(3)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투자 허가 발급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들이 적법·유효하게 작성·제출되었다면, 미얀마 투자위원회가 심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12주 정도가 일반적이다.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규정된 요건들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i) 프로젝트의 허가 기간, (ii) 세금 감면 사항, (iii) 미얀마로 반입하는 외국 자본(현금 또는 현물)에 대한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의 보고, (v) 투자기업청(DICA)에 회사 등록 의무, (vi) 환경 보호 의무, (vii) 보험 유지 의무 등을 기재하여 투자 허가를 발급한다.

나. 영업허가 신청 절차

외국 회사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Permit to Trade)를 받아야 한다. 미얀마 회사법 제27A조에 따라 100% 외국인 투자 유한책임회사, 합작투자 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회사의 지점은 외국 회사로 간주된다.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6차트(kyat)의 인지를 붙여 경제기획개발부 산하 투자기업청(DICA)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한다.

- 등록하려는 회사의 정관
- 자본구조위원회(Capital Structure Committee)의 설문지에 대한 답변서
- 미얀마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의 내용
- 운영 첫 해에 미얀마에서 지출할 경비 예상액

- 회사/개인의 재정 신용도 증빙 서류(투자자의 은행 신용 조회 결과 제출 요함)와 사업 명세서
- 제출자가 회사인 경우, 미얀마에 회사 설립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서

미얀마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회사가 아닌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본사의 정관 및 회사 설립 관련 서류 사본 (본사가 설립된 국가의 미얀마 대사관이 적법하게 공증한 것이어야 함)
- 본사의 최근 2 회계연도 재무제표 사본
- (정관 및 회사 설립 서류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원본과 영문 번역 인증본

영업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조업 회사의 경우 1,000,000차트(kyat)(약 1,150USD), 서비스업 회사의 경우 300,000차트(kyat)(약 345USD)에 해당하는 외국 통화를 미얀마로 반입하여야 한다. 이 중 50%는 영업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미얀마 내로 들여와야 하고, 나머지 50%는 영업허가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들여와야 한다.

다. 회사 등록 절차

투자기업청(DICA)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발급받은 후에는, 회사등록사무소(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이하 “CRO”)에 회사 또는 지점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회사 또는 지점의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 사본
- 미얀마어와 영어로 작성된 정관
- 등록 신고서
- 등록 사무소의 현황(전체 주소) 신고서
- 미얀마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회사의, 지점인 경우 본사의 이사와 임원들 명단

- 회사 또는 해외 지점을 대신하여 미얀마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통지를 받을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들)의 명단

이상과 같은 등록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나면, 회사등록사무소(CRO)는 회사 등록 또는 지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한다.

7. 투자금 및 보험 요건

가. 투자금 요건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요구하는 투자금은 현금과 기계, 장비 등을 포함한 현물이 모두 가능하다. 실무상 제조업에 대해서는 미화 50만 달러,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미화 30만 달러의 최소 투자 자금이 요구되고, 투자가 행해지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에 따라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서 일정액 이상의 투자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투자금은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투자허가 발급일로부터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 이내에 미얀마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서 결정한다. 투자 기간은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서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나. 보험 요건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절차규정(MFIL Procedures)에 따르면,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모든 회사는 미얀마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미얀마 보험공사(Myanmar Insurance)’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회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기계보험, 화재보험, 해양보험, 개인상해보험 등이고, 이외에 건설공사보험, 대형구조물 보험, 전자장비 보험, 기타 미얀마 보험공사가 정한 종류의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외국인 회사가 해외 소재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을 유지하려는 경우, 미얀마 보험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투자 인센티브

가. 조세 감면 혜택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얻어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의 신청에 의해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이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시에 현지 합작투자자 및 미얀마투자위원회(MIC)와의 협상을 통하여 조세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해 외국인 투자의 기술 이전 효과 및 고용 창출 효과 등 미얀마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효과를 합리적인 수치로 보여 준다면 조세 혜택도 그에 상응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투자 허가를 받지 않은 회사들은 이러한 조세 감면 혜택을 신청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1) 소득세 감면

재화 및 서비스 생산 관련 기업들에 대하여, 사업개시 초기 3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판단에 따라, 소득세 감면 기간은 기업의 성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또한, 2012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서는 소득세 면제 혜택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준비금으로 유보된 영업이익이 적립된 후 1년 내에 재투자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부과될 소득세는 감면된다. 또한 미얀마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50%까지 소득세가 감면된다.

(2) 소득공제 및 손금 상계

투자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위해 미얀마 내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손금을 이월하여 상계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직원의 개인소득세를 미얀마 거주 국민들에 대한 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투자자는 외국인 직원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수입 자재에 대한 세금 감면

기계, 장비, 도구, 부품, 자재 등 투자 사업의 건설, 탐사, 개발 기간 동안 수입되는 설비와 자재들에 대한 관세 기타 국내 제세가 감면된다. 이 감면 혜택은, 사업 계획서에 제시되었거나,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승인 하에 연장된 건설 기간 동안 누릴 수 있다.

또한, 사업 초기 3년간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기타 국내 제세가 감면된다. 투자자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 사업 개시일을 알리고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승인을 얻어 이와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기타 인센티브 등

업무상 사용되는 설비, 기계, 기구, 건물 기타 자본재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이 허용된다.

다. 투자 인센티브 관련 유의사항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법(MFIL) 및 1914년 미얀마회사법(또는 정부 기업과의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1950년 특별회사법)에 따라 투자허가를 받고, 회사등록사무소(CRO)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을 때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2012. 2. 27. 제정한 규칙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국인 명의를 빌려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차명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9. 투자 보장

가. 투자 보장 일반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은 미얀마투자위원회(MIC) 허가를 받아 설립된 회사가 허가 기간 또는 승인된 연장 기간 동안 국유화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2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서도 동 조항은 수정되지 않았고, 다만, 만약 공익을 위해 국유화가 행해진다면 당시 시장가격에 기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은 투자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그의 투자금과 이익을, 그가 투자했던 외국 통화로 송금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나. 외국환 거래 관련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은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로 외국환을 송금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항목의 외국환은 미얀마투자위원회(MIC)와 외국환 관리를 담당하는 미얀마 중앙은행 외환관리부(Foreign Exchange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Central bank of Myanmar)의 사전 승인 하에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 외국 자본을 반입한 투자자에 대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회수를 허용한 외국환.
- 외국 자본을 도입한 투자자가 받은 연간 소득에서 모든 세금과 지정된 기금을 공제한 순이익
- 미얀마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의 급여 기타 소득에서 세금과 생활비를 공제한 잔액

투자자가 외국환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감사 보고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이사회 의사록, 미얀마투자위원회(MIC) 승인서, 외국환 거래 신청서를 미얀마 대외무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또는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은행은 미얀마 중앙은행 외환관리부(Foreign Exchange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Central bank of Myanmar)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the Central bank)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 사례 및 검토

☞ 사실관계

A사는 미얀마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이다. A사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외국인의 최소자본, 외국인에 대한 혜택 등을 고려한 후,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허가 및 영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외국인투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최소 자본을 승인된 미얀마 은행에 송금하여 외국인 투자회사로 등록하였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친 후, A사는 원유의 탐사 및 추출을 위한 기업을 운영하였다.

이후 A사는 천연가스에 대한 탐사 및 추출까지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얀마 당국은 A사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A사는 단지 사업 분야를 확장하였을 뿐,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 검토

A사가 비록 원유에 대한 탐사 및 추출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A사가 천연가스에 대한 탐사 및 추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은 미얀마투자위원회(MIC)로부터 허가를 받은 특정 사업 분야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다. 만약, 기업이 MIC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 분야 이외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업의 영위에 대한 허가를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 신청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의 경우 원유에 대한 탐사 및 추출 사업에는 천연가스에 대한 탐사 및 추출 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A사는 미얀마의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10. 회계감사 및 청산

투자자가 미얀마에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감사 등 미얀마 회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회사를 해산 또는 청산할 경우에는 회사의 부채 및 채납 조세를 모두 변제 및 납부한 뒤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미얀마투자위원회(MIC) 및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사법

1. 미얀마의 회사 관련 법령

가. 미얀마 회사법(1914)

1914년에 제정된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ies Act)은 미얀마에서 회사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이다. 미얀마 회사법은 회사의 정관, 자본금, 주주, 주식의 이전, 회사의 운영, 이사 선임 및 권리와 의무, 감사, 해산, 법 위반 시의 제재 등 회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나. 특별회사법(1950)

1950년에 제정된 특별회사법(Special Company Act)은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공개기업과 공개기업의 설립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다만, 특별회사법은 그 조문 수가 많지 않아, 특별회사에 대해서도 미얀마 회사법이 대부분 적용된다. 특별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그 정관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관 승인 후 해당 회사가 특별회사로 분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된다.

다. 기타 규정

이외에도 비공개회사와 공개회사의 청산 절차에 적용되는 1940년 미얀마 회사 규정(Myanmar Companies Rule) 등이 있다.

2. 회사의 형태

가. 개인기업과 조합

사업자는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s)와 조합(Partnership)의 형태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회사등록사무소(CRO)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조합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합(Partnership at will)과 특정조합(Particular Partnership)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합은 조합원간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종료시기에 대해 별도의 합

의가 없으나, 특정조합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되고 존속한다. 이러한 조합에 적용되는 법률은 1932년 미얀마조합법(Myanmar Partnership Act)이다. 이 법에 의하면, 미얀마의 모든 조합은 조합원이 유한 책임인 형태로 결성될 수 없다. 또한 회사등록사무소(CRO)에 등록할 수는 있으나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나. 회사의 종류

미얀마 회사법에 의하면, 다음의 4가지 형태의 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

(1) Company limited by shares(주식회사)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의 총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미얀마에서 설립되는 가장 일반적인 기업조직형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having share capital (유한책임회사)

회사의 직원들의 책임이 직원들이 회사 설립 시에 출자한 자산에 한정되는 회사이다.

(3)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without share capital(공익회사)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사용되는 형태이다. 회사의 경영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익은 회사로 재투자된다.

(4) Unlimited Company (무한책임회사)

그 주주들의 책임에 제한이 없는 회사를 무한책임회사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1) 국내회사, 외국회사, 특별회사

주식회사는 그 주주의 구성에 따라 국내회사, 외국회사, 특별회사로 구분이 될 수 있다. 국내회사(Myanmar Company)는 미얀마 시민이 회사의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외국인 주주가 한 주라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외국회사로 본다. 외국인은 국내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외국회사(Foreign Company)는 외국인이 지분을 가지고 미얀마 내에 설립한 회사 또는 외국에 본사를 둔 상태로 미얀마에 지점 내지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다. 외국 회사의 지점은 본사의 사무실로 간주되며, 지점의 책임은 중국적으로 본사가 부담한다.

특별회사(Special Company)는 정부가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회사법과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규율된다.

(2) 합작투자회사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의 개인, 회사, 국영기업 등과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contract)을 체결하고, 회사 또는 조합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형태에 따라 미얀마 회사법 또는 미얀마 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3) 비공개회사와 공개회사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는 주식 또는 사채의 일반공모가 금지되는 회사로, 회사의 정관에 의해 주식의 이전이 제한되고, 그 주주의 수가 2명 이상 50명 이내(고용인 제외)이어야 한다. 공개회사(Public Company)는 공개시장에서 주식 또는 사채의 청약을 할 수 있는 회사로 그 주주의 수가 최소한 7명이 되어야 한다.

3. 회사의 설립

가. 회사 설립 일반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회사에 정부 또는 국영기업이 참여하여 특별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외에는 1914년 미얀마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외국인투자법(MFIL)상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즉,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투자 허가 및 투자기업청(DICA)의 영업 허가를 받은 후에 회사등록사무소(CRO)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사법에 따른 정부와의 합작투자자는 영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회사 설립을 위해서 중앙 정부가 있는 네피도(Nay Pyi Taw)까지 왕복해야 해서 회사 설립에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 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는 회사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2012년 5월 18일부터 소위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양곤(Yangon)에 있는 국가 기획·경제개발부 산하 투자기업청(DICA)의 지점(Branch)에 회사 설립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투자기업청은 회사의 사명이 중복되는지, 정

관 등 필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 등에 대한 간단한 심사를 거쳐 3시간 이내에 6개월간 유효한 임시 회사등록증(six-month temporary company registration card)을 발급한다. 이후 투자기업청(DICA)은 설립 신청된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식 회사등록증(company registration card)을 발급하고, 이러한 회사의 등록은 2년간 유효하다. 이후 회사 등록의 갱신을 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위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35% 룰 (합작투자회사에서 외국인 지분 비율)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 제5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가 합작투자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지분의 35% 이상을 한 명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보유하여야 한다.

다. 영업허가

외국회사 또는 외국회사의 지점이 미얀마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청(DICA)의 영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영업허가는 현재 매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라. 회사설립의 등록

외국회사 또는 외국회사의 지점이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 회사등록사무소(CRO)에 회사설립 등록을 하면 법인설립인가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발급된다. 법인설립인가증은 회사가 설립에 있어서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고 적법하게 설립되어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증빙 서류이다.

4. 회사의 기관과 사무실

가. 주주총회

회사가 새로 설립되면 그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 이후에는 매년 1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해의 주주총회는 지난 해의 주주총회 이후 15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회사의 일반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결의하게 된다. 회사명의 변경, 정관변경, 감사, 자발적 해산 등 중요 사항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참석한 주주의 3/4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주주총회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의 동의를 없는 이상 주주총회일 21일 전에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된 경우, 회사는 그 결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기업청(DICA)에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사

비공개회사의 경우 최소한 2명 이상의 이사가, 공개회사의 경우 최소한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이사의 권한은 회사의 정관이나 영업허가를 위한 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 채무 면제를 받지 못한 파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 임원 및 대리인의 명단은 그 선임 또는 변경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기업청(DICA)에 보고되어야 한다.

미얀마회사법은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영자(Manager)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미얀마회사법이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이사들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사회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 사명과 등록사무실

회사의 이름은 등록사무실의 외부와 모든 사업장소에 표시되거나 부착되어야 한다. 회사의 인장에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모양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모든 레터헤드, 통지문, 연락문 기타 다른 공식 발표문에도 언급되어야 한다.

모든 회사는 미얀마에 연락과 통지가 전달될 등록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등록사무실의 현황에 대해서 설립 서류를 투자기업청(DICA)에 제출할 때 표시하여야 하고, 사후에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8일내에 투자기업청(DICA)에 통지하여야 한다.

미얀마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법인인감(Corporate Seal)제도가 있고, 대부분의 회사가 인

감을 사용하나 그 사용이 강제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5. 주식의 배정과 이전

가. 주식의 배정

회사는 주식 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식의 배정에 대해 투자기업청(DICA)에 통지하여야 한다. 미얀마 회사법에는 종류 주식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 의결권이나 배당에 관하여 다른 내용을 정한 종류 주식의 발행이 인정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회사 지배 구조를 고안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종의 주식 발행이 검토될 수 있으나 현재 미얀마 회사법이 발달하지 못해 이와 같은 주식 발행 시에는 사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식의 이전

미얀마회사법에 의하면,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은 동산에 해당하고,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전될 수 있다. 주권은 주권번호에 의해 식별되고, 적법하게 날인 되어 있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강한 증거가 된다. 주권은 주식이 배정된 때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주식의 이전이 등록된 때부터 3월 이내에 발행되어야 하고, 3 kyat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주식 이전의 등록 신청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이전 등록 서류가 적법하게 날인되지 않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이러한 주식의 이전을 등록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또한, 주식의 이전에 대해 주식가치의 2.5%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얀마인이 미얀마 회사에 대해 보유한 주식은 외국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반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른 외국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미얀마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투자기업청(DICA)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은 재량사항이며, 매수인인 미얀마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국제통용화폐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외국인 수입과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6. 감사제도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음 주주총회까지 근무할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사의 선임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의 대표가 그 해의 감사를 임명하고 그에 대한 보수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i) 회사의 이사나 임원, (ii) 이사 또는 임원의 배우자, (iii) 이사 또는 임원에게 고용된 자, (iv) 회사의 채무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정부가 그 주식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원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회사의 감사를 선임 또는 재선임한다.

◆ 사례 및 검토

☞ 사실관계

A는 미얀마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투자에 따른 투자 사업 분야 제한 및 토지 소유권 취득 제한 등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는 미얀마 국민인 B를 내세워 기업을 설립하였다. 이후, 명목상 미얀마 국민에 의한 투자이나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실명으로 전환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A는 행정명령에 따른 실명 전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 검토

A는 미얀마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투자 절차를 위반한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미얀마 법률에 의하면, A는 외국인으로서 (i) 100%외국인 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방법 (ii) 지사 혹은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뿐이다. 즉, A가 B명의로 설립한 기업은 현행 법률상 인정되는 외국인의 투자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년 2월 25일에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공포한 행정명령(Order No 1/2012)은 기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명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외국인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100% 외국인 투자회사 또는 합작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실명으로의 투자자 전환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미얀마 투자 위원회가 투자법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 세금 완납 여부, 투자자가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여부, 사업의 위치·사업의 형태 및 성격 면에서 전환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제3장 노동법

1. 주요 법령

미얀마 노동법의 기본 체계는 1964년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Law Prescribing the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People's Workers 1964)에 따라 형성되었으나, 2011년 12월 21일 동 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현재 미얀마에서 시행 중인 노동 관련 법령으로서 노사관계, 근로시간, 휴식, 여성·연소자 근로, 임금, 특별수당, 사회복지와 같은 문제들을 규율하는 법령은 아래와 같다.

- 1923년 근로자 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수당을 규정함
- 1929년 근로분쟁법(Trade Disputes Act):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함
- 1936년 임금지급법(Payment of Wages Act): 특정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요건, 임금지급 방법, 사용자들의 보고와 기록 요건을 규정함
- 1948년 고용통계법(Employment Statistics Act): 근로자와 작업 환경에 관한 통계 수집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
- 1949 최저임금법(Minimum Wages Act): 특정 분야(농업)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규정함
- 1950년 고용 및 연수법(Employment and Training Act): 근로자가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선택하여 유지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적합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951년 공장법(Factories Act): 근로시간, 근로일수, 시간외근로, 보건 및 안전 조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 1951년 휴가 및 휴일법(Leaves and Holidays Act): 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
- 1951년 유전(근로와 복지)법(Oilfields (Labor and Welfare) Act): 유전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 보전에 대해 규율함
- 1951년 상점 및 시설법(Shops and Establishments Act): 상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근로일수, 휴게, 시간외근로, 상점과 음식점 시설에 대해 규율함
- 1954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보장범위와 수당 종류(질병, 임신, 상해, 일시적·영구적 장애, 사망, 장례 등)을 규정함
- 1959년 고용규제법(Employment Restriction Act): 지역 근로자 채용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2011년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Laws 201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별 규제 및 근로허가와 내국인 최소고용의무 비율을 규정함
- 2011년 노동조합법(Labor Organizations Law):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하여 규정함(파업 허용)

비록 위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법률들은 제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미얀마 경제와 노동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기는 하나 여전히 유효한 법률이다. 다만, 노동부(Minister of Labor)를 비롯한 미얀마 정부 기관에서는 새로운 노동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입안단계에 있고, 그 내용도 심사 과정에서 계속 바뀌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입안이 완성되어 개정 노동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얀마에서의 고용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1947년 고용 교환 사무소 예규(Employment Exchange Office Manual), 1950년 고용 및 연수법(Employment and Training Act)과 1959년 고용규제법(Employment Restriction Act), 1960년 고용규제규칙(Employment Restriction Rule), 1976년 노동부 공고 제55호 표준 근로 계약((Minister of Labor Notification No.55, Model Employment Agreement)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노동국(Department of Labor)은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표해 오고 있어, 이 표준 근로 계약서는 실무에서 일용의 기준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근로조건, 임금 및 휴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유관 기관

노동 문제들을 처리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노동부(Ministry of Labor)는 그 산하에 (i)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ii) 공장 및 일반 노동 조사국(Factories and General Labor Laws Inspection Department), (iii) 내륙 운송 중앙관리위원회(Central Inland Freight Handling Committee), (iv) 노동 분쟁 중앙위원회(Central Trade Dispute Committee), (v)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Board)를 두고 있다.

위 기관 중 노동국(Department of Labor)이 노동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다. 노동국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주, 시, 군 단위의 지방 노동사무소(Local Labor office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사 관계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 협력국(Regional and Coordination Division)이 설립되어 있다. 나아가 지방 근로자 감독 위원회(Township Workers' Supervisor Committees), 지방 근로자 보상 보장 위원회(Township Workmen's Compensation Security Committee), 최저임금 심의회(Minimum Wage Councils), 근로자 복지 위원회(Workers Welfare Committees) 등도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지방 근로자 감독 위원회(Township Workers' Supervisor Committees)는 임금체불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개별 분쟁 사건 해결을 담당할 뿐 아니라, 상시로 사업장의 근로관계, 임금지급, 산업안전 등을 점검하고 있다.

3. 채용

가. 현지인 고용

사용자는 지방노동사무소(Township Labor Office)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지방노동사무소(TLO)에 먼저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필요한 근로자의 유형, 근로자의 수, 자격 요건 등을 지방노동사무소(TLO)에 통지하면 지방노동사무소(TLO)는 채용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사용자는 후보자 명단 중 채용할 근로자를 선택하여 지방노동사무소(TLO)에 알리고, 근로자와의 서면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 규칙, 근로자의 의무, 근로시간, 임금과 수당, 수습 기간, 해고, 계약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할 수 있다.

나. 외국인 고용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은 전문가와 기술자 채용을 위해 미얀마인에게 우선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외국인 전문가와 기술자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1년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Law)은 투자자가 미얀마인 숙련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문직과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 사업 개시 후 5년 후부터 25%, 10년 후부터 50%, 15년 후부터 75%의 현지인 최소 고용의무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투자 허가가 철회될 수도 있으므로, 고용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12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 의하면, 미숙련노동자의 경우에는 미얀마 현지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전문기술자의 경우에는 2011년 특별경제구역법과 마찬가지로 사업개시 후 5년 이후부터 25%를, 10년 이후부터 50%를, 15년 이후부터 75%까지 현지인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현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도 국영노동사무소 또는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 준비도 하여야 한다.

4. 임금

미얀마의 임금은 다른 인접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민간 영역에서의 임금은 대체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1949년 최저임금법(Minimum Wages Act)과 노동부(Ministry of Labor) 발표에 따른 최저임금기준이 있다. 노동부(Ministry of Labor)는 최근 공고에서 최저임금을 56,700차트(kyat)로 발표하였다.

임금 지급 방법(일급, 주급, 월급)은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다르다. 임금 지급 실무는 1936년 임금지급법(Payment of Wages Act), 1937년 임금지급규칙(Payment of Wages Rule), 임금지급 절차규정(Payment of Wages Procedural Rules)에 따른다. 임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으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행정상 책임을 진다. 임금체불 시, 근로자는 지방 근로자 감독 위원회(Township Workers' Supervisor Committees)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근로조건

가.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시간외근로는 1951년 공장법(Factories Act)과 1951년 상점 및 시설법(Shops and Establishments Act)에 따라 규율된다. 근로 분야별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로분야	일 근로시간	근로일수
상점, 사무소, 거래소	8시간	6일 (일요일 휴무)
서비스, 언론, 유흥업	8시간	6일 (일요일 휴무)
공장, 유전, 탄광	8시간	6일 (일요일 휴무)
지하탄광	8시간	6일 (일요일 휴무)
정부기관	7시간	5일 (토 · 일요일 휴무)

모든 근로자는 5시간 연속 근로 후 최소 3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시간외 근로는 주당 16시간까지 가능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은 기본급의 두 배이다.

나. 휴가 및 휴일

1951년 휴가 및 휴일법(Leaves and Holidays Act)에 따른 유급 휴가는 6일의 정규휴가, 10일의 연차휴가, 26일의 공휴일, 30일 범위 내의 병가 등이 있다. 민간 기업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위와 같은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1954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출산 전후 각 6주 간의 출산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다. 안전 및 보건

1951년 공장법(Factories Act)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물리적 설비, 유해 물질, 환경적 요소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한 근로자 수에 따라, 의무실, 휴게 공간, 어린이집 등을 제공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다(노동법 제161조).

6. 해고 및 퇴직금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3회의 공식적인 경고를 받은 후에는 퇴직금 없이 해고될 수 있다. 주요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절도 또는 횡령
- 고의적인 회사 기물 파손 행위
- 관계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에 무기류를 무단 반입하는 행위
-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극심한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
- 매우 부도덕한 형사상 범죄 행위
- 뇌물 수수와 부패 행위
- 사업장의 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이 보관된 장소에서 그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사업장에서 소란 및 난동을 야기하는 행위
- 노동부서(Directorate of Labor)에서 검사하고 승인한 것으로서, 고지된 근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사업장에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사업장에서의 음주 및 마약 투여 행위
- 사업장에서의 도박

- 5일 이상의 무단 결근

노동당국에 의해 인정된 일반적 관행에 따르면, 사용자 측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월 급여의 2배 내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 사회보장 및 산업재해보상

가. 사회보장제도

1954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특별회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민간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항목	수당	비고
요양수당	보험수당, 의료 비용	업무상 재해에 한함
질병수당	의료비용 및 임금의 50%에 해당하는금전 수당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각 질병 당 최장 26주까지 지급
임신수당	12주 간 임금의 2/3에 해당하는 임신 수당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출산휴가는 26주
장례수당	유족에게 1000차트(kyat) 지급	
일시장애수당	최장 1년까지 임금의 2/3 지급	최장 기간 52주
영구장애수당	월정 연금 수당	최대 지급액은 임금 등급에 따름

근로자 임금의 최소 4%(사용자 부담분 2.5%, 근로자 부담분 1.5%)는 사회보장보험료로 납부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

1923년 근로자 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은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재해 수당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보상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사용자와 고용 계약 또는 전습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 하에서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계약 및 전습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될 필요는 없고 구두 계약도 가능하며, 명시적인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인 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등 예외가 있다. 또한, 노동부(Ministry of Labor) 공고 제1/2005호에 의하면, 육체노동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 임금이 40,000차트(kyat) 이상인 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업무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에 규정된 액수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상금은 (i) 사망, (ii) 영구적 전신 장애, (iii) 영구적 부분 장애, (iv) 일시적 장애 등에 따라 다르다.

다만, 근로자 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제3조 (7)에 의하면, (i) 보상금 청구가 근로자 보상 위원회(Committee for Workmen's Compensation) 심의 전에 이루어진 경우 또는 (ii)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자 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규정에 따라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상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i) 근로자가 음주나 마약의 영향 하에 있었던 경우, (ii) 근로자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명시적으로 제시된 규칙이나 규정을 고의로 따르지 않은 경우, (iii) 근로자가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 것임을 알고도 안전 기구나 장비를 고의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특정한 행위 의무가 있다. (i) 특정 사용자는 “통지 책자”를 미리 비치하여, 근로자들이 이 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부상에 대한 의무적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i)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각종 위원회의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30일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iii) 사망 후 7일 내에 사망 관련 상황 보고서를 각종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v) 전년도에 보상금이 지급된 부상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필요한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v) 부상 당한 근로자와 사이에 체결된 보상금 계약을 각종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8. 노동분쟁조정

지방 근로자 감독 위원회(Township Workers' Supervisor Committee)는 노동 관계 분쟁에 대해 지방 단계에서의 관리와 조정을 담당한다. 노동 분쟁이 각 지방 근로자 감독 위원회(Township Workers' Supervisor Committee)에 회부되면, 우선 소위 예비협상(Preliminary Negotiation)을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권을 행사한다. 위 조정이 실패하면 그 분쟁은 지방 근로 분쟁 중재위원회(Township Trade Dispute Committee for Arbitration)에 회부된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1929년 노동분쟁법(Trade Disputes Act)에 따라 중앙 노동 분쟁 위원회(Central Trade Disputes Committee)에 회부된다. 중앙 노동 분쟁 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화해와 화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 사례 및 검토

☞ 사실관계

A사는 미얀마에서 가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18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기본급 8000차트 및 추가근무수당 87차트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A사의 근로자들은 A사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부당함을 토로하였으며, 2012년 5월 파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파업을 진행하면서, A사의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을 포함한 78개의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A사는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 검토

ILO에 따른 최저 임금에 비추어 볼 때, A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2012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최저 임금은 56700차트였으나, 파업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 임금은 15000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미얀마는 ILO의 회원국이었기에, A사는 ILO의 최저 기준 역시 준수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사는 근로자들의 78개의 요구사항 중 48개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였으며, 기본급을 22000차트로 추가근무수당을 314차트로 인상하였다. 최근 미얀마에서는 시장경제 및 민주화 바람으로 근로자들의 파업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4장 은행 및 금융 제도

1. 개관

미얀마 정부는 1990년 이후 시장지향적인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종 은행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금융개혁을 단행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이 금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였다.

현재 미얀마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 이하 “MFR”)는 화폐와 유가증권의 발행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 및 통화 정책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MFR) 산하에는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 이하 “CBM”) 및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미얀마 경제은행(Myanmar Economic Bank, 이하 “MEB”), 미얀마 무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이하 “MFTB”), 및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이하 “MICB”) 등의 국영은행이 있다.

가. 국영 금융 기관

-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 CBM)
- 공무원 은행(Government Employees Bank, GEB)
- 미얀마 경제은행(Myanmar Economic Bank, MEB)
- 미얀마 무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MFTB)
-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MICB)
- 미얀마 농업개발은행(Myanmar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MADB)
- 미얀마 소액대출기업(Myanmar Small Loans Enterprise, MSLE)
- 미얀마 보험(Myanmar Insurance, MI)

나. 금융 관련 정부 조직

- 예산국(Budget Department)
- 관세국(Custom Department)
- 내국세국(Internal Revenue Department)
- 연금국(Pension Department)
- 세무 심의 위원회(Revenue Appellate Tribunal)

2. 은행 시스템

미얀마 무역은행(MFTB)은 외환 거래 업무를, 미얀마 경제 은행(MEB)은 예금의 수취 및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미얀마 농업 개발 은행(MADB)은 농업 분야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위하여 각 설립되었다.

미얀마 중앙은행(CBM)을 제외하고, 다른 금융 기관들은 미얀마 금융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모든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얀마 중앙은행(CBM)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미얀마 중앙은행(CBM)은 은행 분야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1) 1단계: 국내 민간 은행의 개설 허용 및 외국 은행의 국내 대표사무소의 개설 허용
- (2) 2단계: 선정된 국내 은행이 외국은행과 합작 투자를 하는 것을 허용
- (3) 3단계: 외국 은행의 영업 허용

미얀마 중앙은행에 의하면, 현재 미얀마 내에 19개의 민간 은행이 영업 중에 있으며, 17개 외국 은행의 대표사무소가 설립되어 있다. 외국 은행의 대표사무소는 통상적인 은행 영업은 할 수 없고, 본국과의 연락 업무 및 해외에서 실시된 대출에 대한 관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은행	허가일	운영 개시일
1	United Overseas Bank Ltd.	1993.11.10.	1994. 8. 2.
2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Ltd.	1994. 2. 8	1994. 11.15.
3	Malayan Banking Berhad (MAYBANK), Malaysia	1994. 8.12.	1995. 4.11.
4	Bangkok Bank Public Company Ltd.	1994. 10.24.	1995. 8.18.
5	National Bank Ltd.	1995. 7. 6.	1996. 7.16.
6	Brunei Investment Bank (BIB)	1995. 9. 18.	1996. 7. 1.
7	First Overseas Bank Ltd.	1996. 4. 30.	1996. 5.15.
8	First Commercial Bank, Singapore Branch	1997. 11. 20.	1998. 5. 5.
9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2001. 4. 18.	2001. 4.18.
10	DBS Bank Ltd.	2003. 9. 12.	2003. 9.12.
11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2006. 3. 17.	2006. 3.17.
12	CIMB Bank Berhad	2008. 2.19.	2008. 2.19.
13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2010. 3. 1.	2010. 4. 3.
14	AB Bank limited	2010.12.10.	
15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Ltd	2011. 9.16.	2011.12. 2.
16	Mizuho Corporate Bank Ltd	2012. 1.19.	2012. 4. 6.
17	Siam Commercial Bank Public Company Ltd	2012. 4. 23.	

3. 미얀마 중앙은행(CBM)

미얀마 중앙은행(CBM)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얀마 통화의 보호, 통화의 효과적인 지급 수단 기능 증진, 유동성·지급가능성·건전한 금융 제도의 촉진,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기금, 신용, 금융 조건의 조성 등이다. 또한, 미얀마 중앙은행은 금융 기관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

고 있으며, 조사·감독·통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미얀마 중앙은행의 기능과 의무

- 국내 화폐의 발행 업무
- 정부를 상대로 한 은행업무의 수행
- 경제발전 및 예산관련 문제를 포함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조언의 제공
- 국채 발행에 대한 조언 내지 국채 발행의 주관
- 통화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통화 정책의 수립 및 이행
-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 및 조사 업무
- 금융 기관, 외국 정부, 국제 기구를 상대로 한 은행 업무
- 환율 정책의 수행 및 정부를 대리하여 외국환 거래를 통제
- 국가 내 국제준비금의 관리 및 필요한 조치의 수행
- 은행, 신용, 통화 등의 분야의 국제거래에서 국가가 참여한 결과 도출된 거래의 수행 및 그 결과 국가가 부담하는 책임의 부담

나. 미얀마 중앙은행이 수행 가능한 업무

- 중앙은행 이름으로 된 증권의 발행 및 국민을 상대로 발행된 증권 유통
- 송금
- 증권의 보호 관리 및 증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자, 배당의 수령
- 채권의 만족을 위한 동산 또는 부동산 매각 및 현금화

- 국내 · 외에 신용의 제공 내지 보증
- 미얀마 중앙은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의 결정

다.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국환 송금 승인

외국인 투자자가 수익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미얀마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회사는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서(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 손익계정, 송금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 외국환 송금 신청서 등을 미얀마 무역은행(MFTB) 내지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서류들이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화관리국(Foreign Exchange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Central Bank of Myanmar)으로 보내지면,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송금 승인 여부 및 송금 허용 금액 등을 결정하며,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승인 받은 금액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급여를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보고, 급여 및 송금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세금영수증, 급여명세서 및 외국환 송금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수입업자는 자신의 미얀마 무역은행(MFTB) 혹은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내의 계좌에 수입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외국환 송금 신청서는 미얀마 무역은행(MFTB) 내지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서는 미얀마 중앙은행의 외화관리국으로 송부되고, 미얀마 중앙은행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4. 국영 은행

가. 미얀마 경제은행(MEB)

미얀마 경제은행(MEB)은 미얀마 내 상업 및 산업 관련 은행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5년 설립되었으며, 국내 259개의 지점을 통하여 당좌거래업무, 저축예금업무, 저축증서(savings certificate)의 발급, 기업 대출 및 개인 대출, 생산 · 거래 · 서비스 관련 업체에

대한 자금 조달 등의 상업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거래를 위하여 미얀마 경제 은행(MEB)의 지점들은 외환 계좌(foreign currency Accounts)의 취급 허가를 받았으며, 미얀마 경제 은행(MEB)은 업무 영역을 국내의 은행 업무에서 국제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넓혀가고 있다.

나. 미얀마 무역은행(MFTB)

국영은행인 미얀마 무역은행(MFTB)은 미얀마에서 외국과 관련한 은행 업무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은행이다. 미얀마 무역 은행(MFTB)은 금융기관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은행 업무 및 금융 서비스의 제공, 대외 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외 거래와 관련 없는 외환 관련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얀마 무역 은행(MFTB)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혹은 비무역 거래로 인한 외국환 거래 규모는 다른 은행보다 크다. 미얀마 무역 은행(MFTB)은 외국의 금융기관과 업무 협력 약정(Cooperation Agreements)과 신용 보장 약정(Credit Line Agreements)을 체결하여 협력함으로써 미얀마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다.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은 금융기관법에 의하여 국영 금융 기관으로서 분리된 법인이다. 미얀마 투자 상업 은행은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 조합, 합작 투자 유한회사, 기관, 개인기업, 수출업자 등에게 상업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미얀마 투자 상업 은행은 생산 및 기술 분야의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5. 외국인의 계좌 개설 및 송금

외국(법)인이 미얀마에 지점 혹은 회사를 설립한 경우 그 지점 및 법인은 미얀마 무역은행(MFTB)에 외화(국제 통용 화폐) 계좌를 개설하거나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에 외화 또는 차트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이 미얀마 내의 회사나 미얀마인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돈을 수령하는 사람의 계좌가 있는 미얀마 무역은행(MFTB) 또는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을 거쳐야 한다. 또한,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일방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무역 은행(MFTB) 또는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ICB)을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이거나 외국기업이 미얀마 은행으로부터 미얀마 차트화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부동산

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미국의 미얀마 제재 조치 때문에 미얀마로 달러 유입이 차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제재 조치는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국 은행 이외의 은행들을 통하는 경우에는 미얀마로의 달러 송금이 가능하며, 미얀마로의 달러 송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은행들은 다음과 같다.

- 싱가포르: United Overseas Bank, OCBC, DBS Bank
- 태국: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Bangkok Bank Public
- 홍콩: United Overseas Bank
- 프랑스: Natexis Banques Populaires
- 말레이시아: Public Bank
- 일본: Mizuho Corporate Bank

6. 미얀마 보험 공사

미얀마 보험공사(Myanmar Insurance Corporation)는 현재 미얀마에서 보험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러나, 미얀마 보험공사는 조만간 민간 업체에 의한 보험을 허용할 것이며, 민간 보험회사는 생명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을 포함하여 6종류의 보험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미얀마 보험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회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7. 미얀마에서 은행 설립

국가 소유이든, 민간 소유이든, 합작 투자에 의한 설립이든 은행 혹은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다.

미얀마에서 금융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회사법(Special Company Act) 및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y Act)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되어야 한다. 설립 신청서는 사업타당성보고서와 함께 미얀마 중앙은행(CBM)에 제출되어야 하며, 미얀마 중앙은행은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를 발급하거나 허가 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설립된 은행의 대표사무소를 미얀마에 설립하기 위해서도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대표사무소는 외국 본사의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은행 영업을 할 수는 없다. 대표 사무소 설립에 대해서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은 후, 투자기업청(DICA)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고, 회사등록사무소로부터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8. 통화 및 외국환의 통제

미얀마에서 통용되고 있는 통화는 미얀마 차트(Kyat), 미국 달러, 외국환거래증(Foreign Exchange Certificate, FEC) 등이 있다.

가. 차트(Kyat)

차트(Kyat, 영문 약자로는 K)는 타국 통화와 교환이 불가능하며, 국외로 반출되거나 국외로부터 반입될 수 없다.

나. 외국환거래증(FEC)

미얀마 중앙은행은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1993년부터 일종의 달러 대체 화폐인 외국환거래증(FEC)을 발행하였다. 외국환거래증(FEC)은 1달러, 5달러, 10달러에 대응하여 세 종류의 액면 금액으로 발행되었으며, 이는 미얀마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처음 발행되었을 당시에는 외국환거래증(FEC)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국환을 보유한 자(내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누구나 외국환거래증(FEC)을 구입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증(FEC)에 의한 지급은 외국환이 지급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미얀마에서 누구나 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임차료 및 차량 및 기계류에 대한 임차료는 외국환거래증(FEC)으로 지급될 수 없다.

외국환거래증(FEC)의 수취인은 자신이 가진 외국환 계좌에 외국환거래증(FEC)을 예치할 수 있으며, 외국환 계좌가 없는 사람은 미얀마 무역 은행(MFTB)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입금 및 송금 시에는 보유한 달러를 외국환거래증(FEC)으로 환전해 사용해야 하고, 달러 인출 시에는 외국환거래증(FEC)으로만 지급되게 된다. 외국환거래증(FEC)은 2011년까지는 달러보다 10%정도 낮게 시장 환율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달러와 거의 같은 환율로 거래되고 있다.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FEC제도는 2012년 안에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미얀마 금융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외국환의 관리

미얀마 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Myanmar Law)은 “외국환”은 (i) 외국 은행이 발행한 화폐 (ii) 외국의 국제기구, 중앙은행, 상업은행에 예치한 예금 (iii) 외국 금융 기구와 국제 금융 기구가 외국환으로 발행한 증권, 외국 정부가 발행하거나 외국 정부에 의하여 보증이 되는 증권 (iv) 국제 자금 이동을 위한 증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얀마의 외국환은 외국환 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1947, FERA)에 의하여 관리된다. 미얀마 중앙 은행법(Central Bank of Myanmar Law)에 의하면, 중앙은행은 외국환 규제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외국환에 대한 관리 및 외국환의 거래에 대한 통제는 외국환 규제법 및 그 하위 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외국환의 사용, 외국인 대주와 외국환 대출 및 담보 계약의 체결, 대출 약정에 다른 원리금의 송금을 위해서는 감독권자(현재는 미얀마 중앙은행장 및 재무부 산하 외국환 거래 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주들이 1988년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 또는 1994년 미얀마 내국인투자법(Myanmar Citizens' Investment Law)의 적용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미얀마 투자 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외국인 대주가 미얀마에서 위의 승인이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경우, 그와 같은 대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법률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외국환 규제법(FERA)에 의하면, 미얀마 중앙 은행(MCB)장의 허가가 없는 한, 외국환을 미얀마 외부에 있는 자에게 송금을 하는 것 또는 미얀마 외부로 송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국외 차입과 외국인 지분투자의 경우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환율 관리

미얀마는 최근까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환율은 1975년 이래로 1달러에 6차트 내외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2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의 경제 개혁을 시작하여 투자 위축 및 암시장 발달의 원인이었던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고, 2012년 4월부터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2012년 8월 현재 환율은 1달러에 870차트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2012년 2월 1일,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의 환전업자가 미얀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도 10,000달러를 미얀마 차트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시행하였다. 이전에는 신분증을 가진 미얀마 국민이 2,000달러만을 환전할 수 있었다. 또한, 2012년 4월 1일부터는 외국인이 10,000불 이하의 금액을 지니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세국(Custom Department)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9. 은행 및 금융 제도의 변화 전망

미얀마 문민 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향후 은행 및 금융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8월에는 세계 은행(World Bank)이 25년 만에 미얀마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자금 지원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조만간 은행, 보험, 외국환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미얀마는 2013년 내지 2014년부터 비공식적인 통화 시장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15년까지 국제적인 은행의 운영을 허가하기 위한 법률 제도를 정비할 할 예정이라고 한다.

◆ 사례 및 검토

☞ 사실관계

A사는 미얀마에서 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 투자자이다. A사는 미얀마의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 아시아 자유 무역 구역 정책(Asian Free Trade Area Policy) 및 현재 미얀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신 외국인투자법(MFIL)에 따라 미얀마 내의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하여 100% 외국인 투자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검토

현행 미얀마 외국인 투자 정책과 관련하여 A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은행 및 보험업은 투자제한분야의 사업이며 미얀마의 국가 정책상 보험의 경우 외국인 투자 보험회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은행의 경우 100% 외국인 소유 은행의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 은행과 합작 투자를 통하여 외국인이 지분의 35% 이하를 보유하는 경우,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립 승인을 해 주고 있다.

제5장 조세 제도

1. 담당 기관

조세 업무는 미얀마 재무세입부(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가 관장하며 실무적으로는 그 산하의 국세국(Internal Revenue Department; IRD)과 관세국(Customs Department)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조세제도 일반

가. 조세 구조

현재, 15종류의 국세와 관세가 있으며 크게 아래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국내 생산 및 소비에 부과되는 조세
- 소득 및 소유에 부과되는 소득세
- 관세
- 국가 소유 재산 사용에 관한 조세

이러한 국세 및 관세는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국세국(IRD)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소득세법(Income Tax Law 1974)에 의하여 규율되는 소득세, 이윤세법(Profit Tax Law 1976)에 의하여 규율되는 이윤세, 상업세법(Commercial Tax Law)에 의하여 규율되는 상업세, 인지세 및 국가발행 복권에 적용되는 복권세 등 5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다. 이 중 이윤세와 복권세는 미얀마 국민에게만 부과된다.

나. 관련 법규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의 조세와 관련된 주요 법은, 소득세법, 상업세법, 미얀마 외국

인투자법(MFIL) 및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Laws; SEZ Laws) 등이 있다.

3. 소득세(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가. 구성

소득세법은 1974년에 공포되었고, 소득세 규칙(Income Tax Rules),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 예산법(State Budget Law) 및 수시로 재무세입부가 공포하는 고시에 의해서 보완된다. 이러한 법령들을 고려하여 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진다.

나. 회계연도, 과세연도와 소득세 신고 납부 및 환급

납세자의 소득은 4월 1일에 개시하여 이듬해 3월 31일에 종료하는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을 받는 회계연도는 소득연도(income year), 소득연도의 이듬해는 과세연도(assessment year)라고 정의된다. 납세자는 소득세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그에 더하여, 납세자는 3월 31일까지 소득을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외화로 획득하는 소득은 소득세 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되며, 거주자는 차트화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수령한 외국통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납부액이 실제로 납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세국에 소득세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초과납부액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된다. 한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관련 고정자산을 처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거주자인 외국인, 비거주자인 외국인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거주자인 외국인과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거주자인 외국인

- 개인의 경우, 과세연도에 미얀마에서 (연속적, 비연속적을 불문하고)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

- 법인의 경우, 미얀마에서 미얀마 회사법 또는 다른 미얀마 현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인인 법인

- 회사가 아닌 조합의 경우,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외국인에 의하여 형성되고, 미얀마에서 지배 · 관리 · 의사결정이 전부 일어나고 실행되는 조합

(2) 비거주자인 외국인

미얀마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를 의미한다.

(3) 거주자 여부에 따른 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전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는 미얀마 국내 소득만이 과세 대상이다.

라. 소득세의 세목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 전문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양도소득, 미공개원천소득, 기타 소득의 세목으로 과세된다.

- (1) 급여: 급여, 임금, 연금, 봉사료, 그 밖의 비용(상여금과 같은), 수수료, 급여나 임금에 대신하여 혹은 그에 더하여 받는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 하에서는 모두 급여로 취급된다.

- (2) 전문소득: 전문직의 수행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소득은 “전문소득”이란 세목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그러한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 (3) 사업소득: 투자된 사업으로부터 수령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는 세목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 (4) 재산소득: 1토지 또는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여 수령하는 수입은 “재산소득”이라는 세목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 (5)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 주식 및 채권 그리고 이와 유사한 종류의 것들을 포함하는 고정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이전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및 공제액 산정은 소득세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6) 미공개 원천소득: 취득의 원천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는 취득 부동산, 동산에 관하여서는 미공개 원천소득 세목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기 타 소 득: 상기 세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역시 이 종류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공제될 수 있지만, 자본 비용, 인적 비용, 적합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될 수 없다.

소득세 대상이 아닌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윤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개인이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를 하려는 경우, 국가(State)/지방(Divisional) 세무공무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세율

소득세율은 재무세입부에서 수시로 공포하는 고시에 따라 정해진다. 아울러, 사업의 종류, 소득의 구분 및 납세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1) 법인세

구분	세율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25%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되는 기업	25%
특별 허가를 통해서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 기업,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외국기구	25%
비거주자인 외국회사(외국법인의 지점 포함)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

(2) 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

구분		세율
급여	특별 허가를 통하여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 기업에 고용되어, 차트화로 받는 급여	20%
	외국인투자법인에서 고용되어 받는 급여	누진세율
	비외국인투자법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	15%
건물, 아파트, 차량 운반구, 기타 재산권의 임대로부터 받는 총 소득		15%
대리인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상담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수령한 총 소득		15%

(3) 개인소득세 – 비거주자인 외국인

구분	세율
급여소득	35%
전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미공개원천소득, 기타소득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

(4) 양도소득세(법인, 개인 모두 포함)

구분		거주자 세율	비거주자 세율
석유와 가스부문에 대한 양도소득을 제외한 양도소득		10%	40%
석유와 가스부문에 대한 양도소득	USD 100,000,000 이하	40%	40%
	USD 100,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45%	45%
	USD 150,000,000 초과	50%	50%

(5) 원천징수세(원천세)

이자, 로열티, 계약대금과 같은 지급의 종류에 따라 원천세가 부과된다.

소득의 종류	거주자 세율	비거주자 세율
이자	—	15%
라이선스, 상표, 특허권 등에 대한 로열티	15%	20%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위원회, 협동조합, 동업기업, 회사 및 현행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재화 및 용역 대금의 지급	2%	3.5%
국내에서의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 대금의 지급	2%	3.5%

4. 법인에 대한 세금

기업전담세무서(Company Circle Tax Office; CCTO)는 국영 기업들을 제외하고, 회사들에 대하여 소득세법(1974) 및 상업세법(1990)에 따라 법인세 및 상업세를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 소득세(이윤세), 인지세 및 복권세는 담당하고 있지 않다. 기업전담세무서(CCTO)의 주된 의무는 회사, 합작투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및 상업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다.

회사의 본사가 양곤 지구에 있다면, 기업전담세무서(CCTO)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나, 국영 기업은 기업전담세무서(CCTO)가 담당하지 않는다.

5. 상업세

가. 상업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상업세는 종전의 상품 및 용역세법(Commodities and Services Tax Law)을 대체하여 1990년에 공포되었다. 상업세는 다른 나라의 물품 용역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또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와 유사한 것으로, 일종의 간접세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상업세는 ①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재화 및 용역, ② 국내에서 생산되고 해외에서 판매되는 재화 및 ③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의 기초 식품 및 원재료는 면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총 10 종류에 한해서 과세된다.

나. 세율

상업세는 ①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 및 해외에서 판매된 재화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② 수입된 재화에 대해서는 양륙비포함원가(landed cost)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상업세법에 부속된 별표 1부터 별표 6에서는 재화의 종류별로 세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7은 위에서 설명한 과세대상인 10 가지 용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분류	항목	항목 수	세율
별표 1	논, 밀, 기름야자, 수술 의료 기구 및 장비, 살충제, 살균제 등	72	면세
별표 2	교육 목적의 전기장비, 목수의 장비와 부대용품, 농업 장비 및 부대용품, 가정용 및 세탁소용 비누, 스포츠 재료 등	58	5 %
별표 3	연료,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타이어와 튜브, 덮개, 농업용 재봉기계, 도로 건설 기계, 로드 롤러, 부품, 가정용 전기 기구 부품 등	134	10%
별표 4	페인트, 안료, 기타 착색제 및 연마제, 시멘트, 가정용 자기(磁器)로 된 세간 및 설비, 전동기, 냉장고, 냉동고, 아이스박스 등	91	20%
별표 5	모든 종류의 카메라의 부품 및 부대용품, 시계, 가구, 에어컨, 악기 등	55	25%
별표 6	담배, 주류, 진주, 옥, 기타 보석용 원석 등	19	각 구체적인 항목별로 30 ~ 200%
별표 7	이하 표에서 설명	10	용역의 종류 별로 5 ~ 30%

〈상업세법 별표 7〉

No.	용역의 종류		과세표준	세율
1	육운(철도 및 도로), 해운, 항공운송업		승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총 수익금액	8%
2	엔터테인먼트업	(a) 영화 또는 비디오 상영	총 수령액	30%
		(b) 그 외 엔터테인먼트		15%
3	무역업		총 판매수익금액	5%
4	호텔 숙박업		총 수령액	10%
5	식음료업		총 판매액	10%
6	관광업(관광가이드업 포함)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총 수익금액	5%
7	자동차세차 및 주유업		재료비를 포함한 총 수익금액	10%
8	생명보험을 제외한 보험		보험료 총액	5%
9	이미용업, 체력단련장업		재료비를 포함한 총 수익금액	5%
10	출력, 탁상전자출판, 컴퓨터디자인		총 수익금액	5%

6. 이중과세방지조약

미얀마는 한국을 비롯하여 영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총 6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7. 인지세

인지세는 소송 및 소송 외의 인지의 판매로부터 징수된다. 소송 인지는 재판절차에 사용되며, 소송 외 인지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 소송 외 인지는, 미얀마 인지법(Myanmar Stamp Act)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기술 이전 및 회사, 동업기업, 합작투자회사 등 여러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식 양도, 저당권 이전 등에도 인지가 필요하다.

8. 관련 법규에 의한 조세 감면 제도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외국인투자법(MFIL)에 따라 운영되는 외국인투자법인에 관하여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로부터 연속하여 3년의 면세기간을 허락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미얀마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감면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 다음의 9가지 조세 감면이 허용된다.

- (1)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준비금으로 유보되어 그것이 1년 내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또는 경감
- (2)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기구 및 비품, 건물 또는 기타 고정자산의 가속 감가상각 허용
- (3) 기업에 의하여 생산된 재화가 수출되는 경우,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50%까지 감면
- (4) 투자자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미얀마에 소득세를 낼 수 있으며, 그러한 소득세 대납액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음
- (5) 상기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미얀마 거주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6) 미얀마에서 발생한, 업무에 실제 필요한 연구개발비는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음
- (7)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3사업연도 내에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허용
- (8) 건설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기구 및 비품, 부품, 원재료의 수입에 대한 관세 또는 기타 국세의 감면
- (9) 건설 완료 후 생산개시로부터 3년간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또는 기타 국세의 감면

이 외에도 특별경제구역법(SEZ Laws)에 의하면, 투자자는 첫 번째 5년간 해외 판매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고, 두 번째 5년 동안은 해외판매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50% 감면되고, 세 번째 5년 동안은 해외 판매로부터 얻어진 소득을 재투자 시 재투자분에 대한 소득세가 50% 감면된다.

◆ 사례 및 검토

☞ 사실관계

A사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A사가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를 함에 따라, A사는 3년간 면세 혜택을 받게 되고, 수출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50%의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A사는 A사와 같은 외국인 기업으로서 특별 경제 구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B사가 5년간의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불공평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결국, A사는 재무부 산하 내국세국(Internal Revenue Department of Minister of Finance and Revenue)에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 검토

현행법상으로는 A사는 B사와 같은 5년간의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 B사는 정부 정책 및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특별경제구역법 상의 특별경제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 경제 구역을 지정하였고, 동 구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A사는 B사와 같은 면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다만, 현재 미얀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신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은 기존 3년간의 면세 혜택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므로 이 법안이 공포될 때를 기다려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제6장 토지 제도

1. 외국인의 토지소유권 개관

미얀마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1987년 부동산양도제한법(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Law)에 따라 정부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과 외국회사는 미얀마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에 의한 승인을 받은 회사는 정부에 장기임차권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얀마 정부는 2011년 9월 30일에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관련된 토지이용권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No. 39/2011)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 30일부터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회사는 허가된 투자 기간에 따라 30년까지 토지를 임차할 수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토지 임대 기간을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2.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양도 제한

1987년 부동산양도제한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 회사에 대해 부동산의 양도나 1년 이상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부동산 거래가 금지된다.

- 누구든지 부동산을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에 매매, 담보, 증여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에 의해, 매도, 매수, 증여, 증여의 승낙, 담보, 담보의 승낙, 교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양도하는 것

따라서, 미얀마에서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가 될 수도 없다. 나아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미

얀마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얀마 부동산법제상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점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현지인을 주주로 내세워 설립한 회사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현지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미얀마 강행법규 위반으로 분쟁이 되는 경우 외국인의 권리가 보호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3. 토지사용권

미얀마에서 토지의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주거용도
- 상업용도
- 산업용도
- 농축산업 용도

비록 외국투자자가 현행법에 따라 토지를 소유할 수 없더라도 토지사용권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부 또는 개인으로부터 임대하여 토지사용권 취득
- 정부 또는 정부의 대리인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토지사용권 취득

외국투자자는 BOT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100% 외국인이 지분을 가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정부 또는 그 대리인과 함께 합작회사 형태로 할 수도 있다. MIC가 승인한 프로젝트 중 다수가 BOT 프로젝트이다.

4. 토지사용기간의 결정

2012년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나 민간인을 통해 토지를 임차할 수 있고, 최초 임대기간은 투자 규모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며, 두 번 연장할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존 법률에서는 민간인으로부터는 토지를 임차할 수 없었고, 그 기간도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30년의 임차 후에 5년씩 두 번 연장되었다. 다만, 최근 제정된 특별경제구역법에 의하면 특별경제구역 내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30년, 1차 연장 30년, 2차 연장 15년으로 최대 75년까지 임대차가 가능하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최초 30년보다 더 긴 최초 임대기간으로 임대차를 할 수 있다.

5. 토지사용권 신청 방법 및 절차

투자자는 토지를 임대할 권리가 있는 자 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문서 또는 다른 증거를 첨부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 토지사용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와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토지사용목적
- 임차인의 미얀마법 준수의무
- 최대 30년의 토지 임대
- 30년이 경과되면 임대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 허용
- 임대일로부터 매 5년마다 임대료 재검토

- 건설업을 포함하는 경우 건설 완료일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마다 임대료의 재검토
- 재검토 당시 적정한 임대료에 따라 새 임대료의 결정
- 5년의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선불하는 경우 10%의 할인
- 계약 조건과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토지 임대 중단
- 임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전대와 임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점유권 양도에 관해서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의무
- 계약 기간 중 토지에서 발견된 자원은 임차인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

6. 토지 사용 조건

투자자는 임차한 토지를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승인한 조건 또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승인에 따라 투자자는 전대(sub-lease), 저당권의 이전, 토지사용권을 확보한 사업권의 양도에 관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토지 사용을 위한 투자 사업에 도시 건설, 호텔 · 학교 · 호스텔 · 레지던스 빌딩 등의 건설, 공장 건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업 계획을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정부 기관의 도시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 사례 및 검토

☞ 사실관계

A사는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승인 하에 미얀마 정부와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와 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A사는 호텔을 설립하여 BOT 방식으로 운용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A사는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한 국제 기준의 호텔 건설을 내용으로 하여 미얀마 정부와 임대 계약 및 BOT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들에는 A사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토지는 물론 건설이 완료되거나 건설 중인 건물을 정부에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A사는 토지를 개발하면서 호텔뿐만 아니라 관광 및 교육을 위한 건물도 동시에 건설하였으며, 충분한 주차 시설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결국, 미얀마 정부는 토지 및 건물을 강제로 이전하였으나, A사는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투자법상 국유화 금지를 보장하는 규정에 배치하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을 포함하여, 미얀마 정부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검토

BOT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승인을 받은 정부와의 장기 토지임대계약서 및 BOT 계약서가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우선적으로 규율하게 된다. A사가 호텔 이외에도 관광 및 교육을 위한 건물을 지은 것이 당초 관련 계약상에 규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및 관련 계약에 규정된 충분한 주차장 확보 여부의 사실 판단이 권리 의무를 확정짓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법상 국유화 금지의 보장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 법령 및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에 보장되는 것이고, 관련 계약에서 별도로 계약 위반 시에 건물의 정부 귀속을 약정한 경우라면 그 계약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분쟁 해결기관(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서에 정부의 주권면제 조항을 반드시 규정해 두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제7장 자금조달 및 담보거래

1. 자금조달

가. 미얀마투자위원회의 승인(MIC)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 또는 미얀마 시민투자법(Myanmar Citizen Investment Law)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대출 거래에 대해서 미얀마투자위원회(MI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투자 프로젝트의 성격과 대출 은행의 재량 정도에 따라, 자금조달 또는 담보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나. 대출이자율

1992년 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에 의하면, 미얀마 현지 통화인 Kyat로 현지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 대출이자율에 대한 제한이 있으나,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외국환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무상 재무부(MFR) 산하 외국환관리위원회(FEMB)가 대출이자율을 심사하고 있으며, 실무상 대출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 계약의 초안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무부는 이자율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담보권의 종류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도 식민지하에서의 법률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많다. 1882년의 부동산양도법(Transfer of Property Act)은 이러한 법률 중의 하나이며, 이 법에는 여러 가지 담보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는 저당권(mortgage)과 charge가 있으며, 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는 질권(pledge)이 있다.

가. 저당권(mortgage)

저당권(Mortgage)은 대출계약 또는 기타 금전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는 담보권을 말한다. 부동산의 소유자인 저당권설정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증서를 저당권자에게 양도하게 되며, 저당권을 등기권리증등록사무

소(Office of the Registration of Deeds)에 등기하여야 한다.

저당권에는 일반적인 담보권 이외에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어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사용권을 갖는 저당권,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자체를 이전하는 저당권, 부동산에 대한 권리증을 이전하는 것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저당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 없이 당사자들의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는 Charge라는 담보권이 있다.

나. 질권

질권은 1872년 계약법(Contract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권이다. 질권은 동산의 점유를 넘기는 방법으로 채무의 지급이나 계약의 이행을 담보한다. 대부분의 은행 대출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나 charge, 또는 동산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된다.

3. 담보권의 등록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담보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등기권리증등록사무소(Office of the Registration of Deeds)에 등록되어야 한다.

1913년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y Act)에 의하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위한 담보권, 미납자본금에 대한 담보권,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회사의 회계장부상 부채에 대한 담보권, 회사의 동산(재고 제외)에 대한 담보권, 회사의 사업에 대한 포괄 담보권 등 회사가 제공하는 일정한 담보권에 대해서 회사등록사무소(CRO)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담보권은 효력이 없다. 즉, 위와 같은 담보권에 대해서 해당 담보권이 설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담보권 설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회사등록사무소(CRO)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청산인 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위와 같이 담보 등록을 하게 되면, 피담보채권액이 기재된 담보권등록증명서가 교부되는데, 이 증명서는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담보권이 등록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

4.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제한

1987년 부동산 양도제한법(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Law)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다음과 같은 거래는 금지된다.

- 부동산을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에 매매, 저당권 설정, 증여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거래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부동산을 매도 및 매수, 증여 및 증여의 승낙, 저당권 설정 및 저당권 설정의 승낙, 교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양도승낙에 의하여 양도하는 거래

즉,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는 미얀마에 있는 토지 또는 기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얀마 현행법 하에서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대출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 담보를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 2.나.의 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 외에는 외국인인 대주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외국의 금융기관이 미얀마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주는 국내에서 신용있는 기관의 보증을 받거나 해외 SPC를 통한 투자 등을 통해 지분 질권을 설정하거나 국내에 개설과 수익금 계좌 등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례 및 검토

☞ 사실관계

A는 외국인 투자자로서 미얀마에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A는 미얀마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A는 사업의 확정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하여 미얀마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하려고 하였고, 동 대출에 대하여 그가 임차하고 있는 토지 상에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은행은 A에게 대출을 거절하였다. 이에 A는 외국 은행에 대하여 대출을 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의 은행 역시 A의 대출 신청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대출이 거절되자 A는 임대 토지를 30년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그 토지 상에 담보권을 설정할 권리 역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검토

A는 임대 토지 상에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A는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 계약의 내용 및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허가한 내용에 부합하게 토지를 이용할 권리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인은 미얀마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외국은행에 대한 담보설정도 불가능하다.

제8장 수출입 제도

1. 수출입제도 개관

가. 적용 법률

수출입절차는 1947년 수출입관리법(임시법)(Control of Imports and Exports (Temporary) Act1947)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수출입 거래에 대한 주무관청이며, 상무부 산하 무역국(Directorate of Trade)은 수시로 수출입허가를 포함한 수출입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명령, 고시, 지시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나. 등록

수출입업자 등록은 수출입 거래를 포함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필수 단계이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따라 허가 받은 외국인 투자회사 역시 미얀마에서 수출입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출입업자 등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무역국에서 수출입업자 등록 증명서를 교부한다. 수출입업자는 한 번의 등록으로 무역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수출업과 수입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수출품,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 할당량이나 한도는 없다.

수출입업자 등록 수수료는 1년간 유효한 등록의 경우에는 5,000차트(Kyat)이고, 3년간 유효한 등록의 경우에는 10,000차트(Kyat)이다.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출입허가

수출입업자로 등록을 마친 뒤, 등록된 수출입업자는 개별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 허가과 수입 허가 발급 권한은 상무부 산하의 무역국에 전속되어 있다. 무역국은 통상적인 수출 및 수입을 위한 수출 허가과 수입 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경무역국(Department of Border Trade)은 인접한 나라와의 육로 무역에 관한 수출허가 및

수입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 수출허가

(1) 수출허가 취득

특정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수출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등록을 한 수출업자는 무역국이 규정한 양식을 사용한 신청서에 6차트(Kyat)의 수입인지를 붙여, 수출업자의 등록번호, 등록 날짜, 법인 등록 번호(company registration number), 신청인 이름, 신청일자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견적 송장, 상세수출방법, 상품의 이름, 수량, 등급, 사양, 가격, 구매자의 이름과 국가명, 지급방식, 운송기간, 도착국가 등이 명시된 수출계약 등과 같은 문서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수출업자가 이 정보 및 문서들을 제출함으로써 무역국을 만족시키면, 무역국은 그의 재량으로 수출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기간은 무역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2) 수출허가 수수료

일반적으로 수출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그러나 경목을 통나무 형태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비스 수수료를 무역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출허가 대상의 FOB 가격 (Kyat)	수수료(Kyat)
1 - 50,000	25,000
50,001 - 100,000	50,000
100,001 - 150,000	75,000
150,001 -	100,000

나. 수입허가

(1) 수입허가 취득

수출허가 취득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한 수입업자는 수입허가를 얻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6차트(Kyat)의 수입인지를 붙이고, 수입업자의 등록번호, 등록날짜, 법인 등록 번호(company registration number), 신청인 이름, 신청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견적 송장, 상세수입방법, 상품의 사양, 포장 및 운송

방법 등이 명시된 수입계약 등과 같은 문서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한 번에 3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2) 포괄적 수입허가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가, 사업의 목적상 빈번하게 설비투자 및 원재료 수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무부로부터 포괄적 수입허가(Open General License, OGL)를 받을 수 있다. 포괄적 수입허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과 항목들에 대해서만 수입허가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3) 수입허가 수수료

수입허가 수수료는 해외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되어야 한다. 국경무역을 통한 수입과 국영기업들, 정부부처, 협동조합 및 사기업에 의한 일반 무역을 위한 수입 및 수입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수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허가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수입물품의 CIF 가격에 따라 정해지며, 최소 250차트부터 최대 50,000차트이다. 수입허가 수수료는 수입허가에서 지정된 일자 이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CIF가격 (차트)	수입허가 수수료(차트)
10,000	250
10,001 - 25,000	625
25,001 - 50,000	1,250
50,001 - 100,000	2,500
100,001 - 200,000	5,000
200,001 - 400,000	10,000
400,001 - 1,000,000	20,000
1,000,001 -	50,000

(4) 수입허가 수수료의 면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조직, 회사 및 합작투자회사는 미얀마 외국인투자위원회(Union of Myanmar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FIC”)가 규정한 외국자본으로, 건설기간 동안 사용되는 기계장치, 기구, 장비, 기계 부품 및 원재료의 수입에 대하여 허가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건설 이후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건설기간 완료 후 첫 3년간의 상업적 생산기간 동안 원재료 및 포장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러한 수수료 감면이 미얀마와 해당 조직, 회사 및 합작투자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이 완료된 이후 추가적인 면제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에 의하여 수입 허가 수수료를 면제 받더라도, 수입허가 또는 포괄적 수입허가를 얻은 다음에야 수입을 할 수 있다.

(5) 수입허가 항목의 수정

원래의 수입허가에서 표시하고 있는 항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을 원하는 항목에 대하여 500차트 또는 허가 받은 총 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수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출입 금지 품목

미얀마 제품들 중 몇 가지 품목들 또는 수출허가에서 제한하는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들이 수출될 수 있다. 또한, 관계 정부 부처에서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모든 품목들도 수입허가에 따라 수입될 수 있다. 수출이 금지되는 일반적인 유형은 무기와 탄약, 포르노, 골동품, 모든 종류의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 등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은 미얀마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양념 가루(MSG), 청량음료, 비스킷, 츄잉껌, 케이크, 웨이퍼(wafers), 초콜릿, 통조림 식품(고기와 야채, 과일, 견과류), 국수, 주류(liquor), 맥주, 담배, 생과일(사과, 포도, 배, 체리, 타마린드, 대추야자가 그에 해당하나 국경무역을 통한 수입은 허용됨), 플라스틱 제품(화장실 용품과 가정용품¹), 위조동전 및 통화, 치수가 찍히지 않은 옷감, 트럼프 포르노, 모든 종류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미얀마 연방의 국기가 인쇄되거나 복제된 물품, 부처와 미얀마의 불탑의 상징을 지니는 물품 및 기타 현행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물품².

¹ 이 항목은 국경무역에 한해서만 금지된다.

² <http://www.myanmarcustoms.gov.mm/importprohibitionsrestrictions.aspx> 에 일반적인 금지품목이 열거되어 있으며, Myanmar Customs Department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수출입 절차

가. 수출 절차

- (1) 등록된 수출업자는 무역국이 제정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의 발급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
- (2) 구매자에 의하여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MICB)에 취소불가능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 (3) 구매자에 의하여 화물이 선적될 선박이 지정되어야 한다.
- (4) FOB조건으로 발송되는 화물의 선적을 위해 미얀마 항만 당국에 연락하여야 한다.
- (5)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및 대행 서비스(Inspection and Agency Services)에 의하여 규격, 무게, 품질 및 포장에 대하여 선적 전 검사가 실시된다.
- (6) 운송 요금, 선적 서류 및 화물의 세부 사항은 거래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

나. 수입 절차

- (1) 등록된 수입업자는 무역국에 수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에 외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2) 수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에는 수입 계약, 세부 규격, 포장 방법, 배송 단계가 기재되어 있는 견적 송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수입허가 수수료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CIF(양곤) 가격에 의해 매겨진다.
- (4) 수입업자에 의하여 은행에 취소불가능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 (5) FOB조건으로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수입업자는 미얀마 보험(Myanmar Insurance)으로부터 보험을, 미얀마 5 스타 라인(Myanmar Five Star Line)로부터 화물 예약을 확보하여야 한다.
- (6) 매도자로부터 선적통지를 받은 후,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의 통관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5. 수출입을 위한 세관 절차

시장 경제 체제를 지원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2년 3월 12일에 관세법(Tariff Law)이 제정되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 물품의 분류와 관세 산정을 위한 고시가 공표되고 있다. 관세부과의 현대화와 표준화를 위하여, 국제 관행에 따라 신 국제통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를 1992년 4월에 도입하였다.

가. 수입

현행 법령에 따라 모든 수입 물품들의 통관을 위해서는 아래 첨부 서류들과 함께 수입신고서(CUSDEC-1)가 관세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 (i) 수입허가증, (ii) 송장 원본, (iii)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iv) 포장 명세서, (v) 기타 관련 정부 부서의 승인서 및 허가서

관세는 관세율표에 따라 납부되어야 한다. 수입관세는 CIF 가격 및 CIF 가격의 0.5 %에 해당하는 하역료를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부과된다.

관세와 함께, 상업세도 과세 평가액 및 관세의 합계액인 양륙포함가격을 기준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된다.

나. 수출

수출 상품의 선적 시에 다음의 서류들이 수출신고서(CUSDEC-2)와 함께 관세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 (i) 수출 허가증, (ii) 송장 원본, (iii) 포장 명세서, (iv) 매매계약, (v) 선적지시, (vi) 신용장 또는 일반 송금 면제 증명서, (vii) 물품의 샘플, (viii) 임산물의 수송을 위한 삼림 운송증, (ix) 살아있는 동물의 수출을 위한 건강 증명서, (x)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수출을 위한 허가증, (xi)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구되는 증명서 및 허가증

관세는 관세율표에 따라 수출 품목에 부과되며, 수출 관세는 FOB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다.

6. 관세환급

1978년에 제정된 해상관세법(Sea Customs Act)은 관세환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 조건에 따라 관세환급시설에 있는 물품이 다시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의 7/8 상당액이 환급된다.

- (1) 재수출 물품은 관세가 납부된 물품과 동일해야 할 것
- (2) 재수출이 이루어지는 항과 수입항이 동일한 경우, 수입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기간은 신청에 따라 3년까지 연장 가능)
- (3) 재수출물품은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신고된 물품을 포함하지 않을 것
- (4) 물품은 환급청구가 금지된 선적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가 아닐 것
- (5) 수출되는 물품의 가치는 환급청구가액보다 클 것
- (6) 환급액이 단일 선적에 대하여 5차트(Kyat) 이상일 것
- (7) 물품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으로 신고된 물품을 포함하지 않을 것

7. ASEAN과 자유 무역 전망

미얀마는 ASEAN 회원일 뿐 아니라, 다음 라운드에서 ASEAN 의장직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모든 지역사회 표준 및 국제 표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ASEAN 특혜관세제도(ASEAN Integration System of Preference scheme; AISP)에 따라, 총 293 종류의 미얀마 제품이 말레이시아에 관세가 면제되어 수출될 수 있다. 또한, ASEAN 은 가까운 장래에 회원국 간의 자유 무역 지역(Free Trade Area)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 기업들은 보다 편리한 무역 시스템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얀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수출입업만을 수행하기 위한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사례 및 검토

☞ 사실관계

A는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인 투자자이며, 그 결과 A가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는 상무부 산하 무역국(Directorate of Trade under the Ministry of Commerce)에 원재료의 수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그 이후 원재료 뿐만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완성제품을 수입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A는 밀수혐의를 받게 되었고, A는 법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검토

A의 행위는 밀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입 허가는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A는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 이외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9장 분쟁 해결 제도

미얀마의 사법 시스템은 보통법(Common Law)과 시민법(Civil Law)이 혼재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보통법의 원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보통법의 원리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안인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분쟁은 주로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 개방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외국 기업이 미얀마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중재를 통하여(특히 외국 중재)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법원 제도

미얀마 헌법(Constitution of Myanmar)에 의하면, 미얀마의 법원의 재판은 기본적으로 3심제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미얀마의 경우, 소송 가액 또는 형의 경중 등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미얀마의 법원은 소송의 가액 또는 형의 경중 등에 따라 그 관할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만, 해상분쟁과 같이 법률상 정해진 소송의 형태는 특정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있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자유로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 번의 재판을 받는 것이 보장되게 된다.

(1) 대법원(Supreme Court of Union), 고등법원(High Courts of the Region, High Court of the State), 자치구 법원(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Division, 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Zone), 지방법원(District Courts), 마을법원(township courts)

(2) 군사법원(Courts-Martial)

(3)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 of the Union)

군사 법원은 군사 재판만을 담당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한 문제를 담당한다. 미얀마의 각 법원은 2000년 제정된 재판관할법(Judiciary Law)에 의하여 재판권이 있는 재판을 담당하며, 미얀마 대법원은 각급 법원을 감독하는 역할을 추가적으로 담당한다.

대법원은 한 명의 대법관(chief justice), 세 명의 부대법관, 일곱 명에서 열두 명 사이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관할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한 형사 및 민사 사건(Original criminal and civil case)에 대한 판결
- 결정에 의해 대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한 판결
- 상소심에 대한 판결
- 고등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에 대한 상소
-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을 수정한 판결(revision case)에 대한 판결
- 각급법원에서 선고한 사형선고의 확정 내지 사형선고에 대한 상소
- 법률에 어긋나는 각급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에 대한 심리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변경 내지 파기
- 시민의 권리를 규정한 법률에 반하는 각급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에 대한 심리 및 필요한 경우 변경 내지 파기
- 해상 관련 소송
- 기타 법률에 의해 대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고등법원, 지방법원, 마을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건을 관할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각급 법원에 제소가 가능한 민사사건
- 관계 법령에 따라 각급 법원에 제소가 가능한 형사사건
- 기타 법률에 의한 관할사건

고등법원은 기본적으로 지방법원의 결정, 판결, 명령에 대한 판결, 상소 등을 담당하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송된 사건이나 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을 담당한다. 지방법원은 소송 금액이 3,000,000차트 이하인 사건만을 담당하며, 마을법원의 결정, 판결, 명령에 대한 판결, 상소 및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송된 사건이나 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을 담당한다. 마을 법원은 500,000차트 이하의 사건을 담당한다.

2. 중재 제도

미얀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의 분쟁은 주로 중재를 통하여 해결 되나, 중재 기관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지는 않다. 중재와 관련된 기본법인 중재법(Arbitration Act, 1944, 이하 “1944년 중재법”)은 194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계약의 내용상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는 동 법의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동 법은 중재인과 심판인(umpire)의 선정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중재인 내지 심판인의 선임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선정된 중재인 내지 심판인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 및 중재 판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1994년 중재법은 중재 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법원이 개입하여 사법 절차가 개시된 경우, 미얀마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외국 변호사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³

3. 중재 제기 기한 및 당사자의 사망 또는 파산

가. 제소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의 준용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와 관련한 규정들은 중재에도 적용이 되며, 그 결과 중재에서도 제소기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인의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혹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임되거나 지정된 중재인에게 중재 판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제한법(Limitation Act)에 있어 중재 절차는 개시된 것으로 취급이 된다. 법원이 중재 판정을 파기한 경우에도, 이는 제소기간제한법에 있어 당사자에게 영

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재 판정의 개시일부터 법원의 파기일 사이의 기간은 제소기간제한법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된다.

나. 당사자의 사망 내지 파산

중재 합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여도 중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 합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중재 판정은 그 당사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파산 역시 중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이 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파산관재인 역시 계약 내의 중재 조항에 구속된다.

4. 중재인 내지 심판인의 선임

중재인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1인 중재인으로 하고, 2인 이상의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 내지 심판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중재인 또는 심판인 선임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즉 중재인 내지 심판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i) 계약상 중재인 선임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임과 관련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ii) 선임된 중재인이 중재 판정을 거부하는 경우, (iii) 당사자 내지 중재인이 중재인 또는 심판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선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중재인 또는 심판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두 명의 중재인이 있는 경우, 합의 하에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들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심판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

3인 중재의 경우, 2인의 중재인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각각 선임되고, 나머지 1인은 선임된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선임하게 된다. 3인 중재를 합의한 경우 중재인들 중 1인을 심판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중재 약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재인들의 다수결에 의해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다수결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인의 결정에 의하여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³Rule3, the Advocates' Admission Rules of 1954 and Pleader's Admission Rules of 1955.

5. 중재 판정

가. 중재 판정 기한 및 구속력

중재인(들)은 법원에 의한 기한 연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되고 난 이후로부터 4개월 이내에 중재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중재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인이 결정을 하게 된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관련 비용 역시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조치를 위한 판정 역시 내려 질 수 있다.

나. 중재 판정의 수정

중재 판정은 중재인(또는 심판인)과 법원만이 수정할 수 있다. 중재인은 중재 판정에 있는 오기 등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인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i) 중재 판정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 (ii) 중재 판정이 형식상 문제점이 있거나, 명백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iii) 중재 판정이 오기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수정할 수 있다.

다. 중재 판정의 환송

법원은 (i) 중재 판정 중 판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ii) 중재 제기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정이 있고 그와 같은 부분을 중재 제기된 사항에 대한 판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iii) 중재 판정이 집행을 하기에 불명확한 경우, (iv) 중재 판정이 법률에 반하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재 판정을 환송할 수 있다.

라. 중재 판정의 취소

(i) 중재인의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ii) 중재 판정이 불분명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iii) 중재 판정이 중국적이지 않거나 법률 적용 또는 사실 판단과 관련한 과실이 있는 경우, (iv) 중재인이 분쟁과 관련한 증언을 듣기를 거부하는 경우, (v) 중재 판정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내려진 경우에는 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중재 절차와 재판 절차의 관계

법원은 일정한 경우 중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가. 사법상의 절차

중재 판정의 집행 등을 법원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중재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대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중재 절차와 관련한 법원에 대한 신청 절차는 민사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민사절차법의 관련 규정 이외에도, 1944년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통지 절차와 당사자의 진술과 중재인 또는 심판인의 요청에 의한 증인의 증언을 강제하는 절차 등이 적용된다.

나. 재판 절차의 중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법원에 제소된 경우, 법원은 재판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다. 중재 합의가 있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한 경우, 상대방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i) 중재 합의가 서면의 형태로 유효하게 존재하고, 문제된 사안이 중재 판단의 대상이 되고, (ii) 중재 합의가 포함된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재판 절차의 중지를 신청하고, (iii) 재판 절차의 별다른 진행이 없고, (vi) 중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v) 중재에 회부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지한다.

7. 미얀마 중재 판정의 집행

중재인 또는 심판인에 의하여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민사 법원을 통해서만 집행 될 수 있다. 민사 법원은 법원에 의한 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재 판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 중재 판정의 집행은 외국 법원에게 위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법 공조는 미얀마가 체결한 국제 협약에 따른다.

8. 외국 판결 및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가. 외국 판결의 집행

미얀마 민사절차법에 의하면, (i) 관할권을 가지지 않은 법원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ii) 사건의 승패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 (iii) 재판 절차가 국제법상 규정에 반하는 경우, (iv) 미얀마 법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 재판절차가 미얀마 법에 반하는 경우, (v) 재판 절차가 일반법상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 (vi) 기망에 의해 판결을 취득한 경우, (vii) 판결을 지속시키는 것이 미얀마 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의 확정 판결은 미얀마에서도 확정 판결로 인정된다. 다만, 1963년 이후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나.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미얀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는 가입하였으며, 위 의정서와 협약의 이행을 위한 1937년 중재(의정서와 협약)법(이하 “1937년 중재법”)이 제정되었다. 1937년 중재법에 의해 외국 중재 판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i) 준거법에 따라 중재 합의가 유효할 것, (ii) 계약상 혹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중재재판소에서 중재가 이루어 질 것, (iii) 해당 국가의 중재 절차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iv) 중재가 이루어진 국가 내의 판단에 의할 때 중재가 중립적인 것일 것, (v) 미얀마 법에 의할 때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 판정이 내려졌을 것, (vi)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이 미얀마의 법 및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 중재 판정의 유효성을 다투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외국 중재 판정의 유효성을 다툰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 외국 중재 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위 판정이 무효가 된 경우, (ii) 집행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중재 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를 할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법적 무능력 상태에 있었던 경우, (iii)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판정이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iv) 중재 판정이 관련 쟁점을 누락하고 있거나, 중재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판정을 내려진 경우에도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다.

뉴욕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나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나라들에서의 중재 판정은 미얀마 내에서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37년 중재법에 규정된 나라들 중에 미얀마와 집행에 관한 상호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그 외국 중재 판정이 미얀마 내에서 집행될 수 있다. 1938년 미얀마 관보에는 미얀마와 상호 협약이 체결된 국가들이 열거되어 있다. 다만, 위 관보에 열거된 많은 나라들은 1958년의 뉴욕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뉴욕 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에서의 중재 판정은 미얀마에서 집행될 수 없으므로 한 나라를 중재 장소로 정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국제 협상 지위 및 국가 간의 협약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9. 준거법, 중재 장소 및 중재 언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외국을 중재 장소로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미얀마 수·출입 규정(Myanmar Export/Import Rules and Regulations)은 외국 기업과 무역에 관한 분쟁이 있는 기업은 미얀마의 법, 즉 1944년 중재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수·출입 규정은 기업이 수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품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약서에는 (i) 수·출입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조항과 (ii) 미얀마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미얀마 수·출입 규정에 의하면, 외국 기업과의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미얀마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미얀마 중재법에 따라 미얀마에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 분쟁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일방이 외국인 내지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을 중재 장소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법령은 없다. 실무상으로는 미얀마에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미얀마 정부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계약들이 중재 장소를 외국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

준거법 내지 중재 장소의 지정 방법 등과 관련하여 미얀마의 현행법상 특별히 요구되는 별도의 추가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기업이 미얀마 내부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준거법 및 중재 관련 조항을 작성함에 있어 상호 합의한 영문 계약서 등을 통하여 명확한 의미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계약서는 한국인간의 계약인 경우에도 분쟁 해결 기관이 한국법원이 아닌 한,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어느 관할에서도 그 원문의 정확한 의미 해석이 가능한 영어로 체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미얀마 정부와의 계약의 경우 관할 부서에 따라 계약서를 미얀마어로 작성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영문본과 함께 체결하고 영문본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례 및 검토

☞ 사실관계

A사는 외국인 투자회사로서 미얀마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B사는 미얀마 현지 회사로 A사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A사와 B사 간에는 A사가 일정량의 물품 대금을 선지급하면 B사가 A사의 물품 대금에 상응하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재료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동 계약은 미얀마를 중재 장소로 하여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계약에 따라, A사는 물품 대금을 선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사가 지속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하지 않자, A사는 B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물품의 공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A사가 기업 경영의 악화로 파산에 이르게 되자, B사는 파산하게 된 A사는 더 이상 중재 판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검토

B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미얀마 내의 중재 절차에 있어 당사자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중재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이 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파산관재인 역시 계약 내의 중재 조항에 구속되게 된다.

IX. 참고문헌

1. 現代社會文化研究 No. 38, Ei Ei Khin, 2007年
2. ASIA ARBITRATION GUIDE 2nd Edition, RESPONDEK & FAN, 2011년
3. Legal, Tax & Investment Guide, MYANMAR THANLWIN LEGAL SERVICES, LTD in association with DFDL MEKONG, 2011년
4. Myanmar Investment Guide, MIC
5. 미얀마 물류시장 진출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제10호, 2012년
6. 미얀마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08년
7. 아시아 진출 우리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0년
8. Foreign Direct Investment Relation Between Myanmar and ASEAN, IDE DISCUSSION PAPERS NO. 149, Thandar Khin, April 2008
9. Investment Environment of Myanmar, Aung Naing Oo, KOREA-MYANMAR ECONOMIC COOPERATION FORUM 2012
10. 참고 웹사이트
<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MM/law/21939?astSeq=475>
<http://www.mcpt.gov.mm/mcpt/miscellaneous.htm>
<http://www.mcpt.gov.mm/mcpt/miscellaneous.htm>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m.html>
http://myanmargeneva.org/e-com/Commerce/moc_web/ie_procedure/FSie.htm
<http://www.myanmarcustoms.gov.mm/exportprohibitionsrestrictions.aspx>
http://myanmargeneva.org/e-com/Commerce/moc_web/ie_procedure/FSie.htm

시 리 즈 목 록

국가	제목	법무법인	저자	사무소
중국Ⅰ	중국 투자·기업	광장	이상기 오승룡 최광호	광장-북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삼원교 서광서리 갑1호 동역대하(제3차업)B좌 1802실 86-10-5822-0747 mail-bj@leeko.com
중국Ⅱ	중국 세법	세종	최병선 장대훈 정천주	세종-북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소운로 36호 국향빌딩 10층 1008호 86-10-8447-5343 china@shinkim.com
중국Ⅲ	중국 공정거래	세종	최병선 장대훈 김도현 (前세종 변호사)	세종-상하이 중국 상해시 장녕구 선하로 319호 원동국제광장 A동 8층 808호 86-21-6235-0411 china@shinkim.com
베트남Ⅰ	베트남 투자·조세·노무	율촌	양은용 배용근 강수구 한윤준 안우진 Tran Anh Dung	율촌 - 하노이 Unit M01, Atlanta Place, 49 Hang Chuoi, Hai Ba Trung District, Hanoi, Vietnam 84-4-3972-8123 eyang@yulchon.com 율촌 - 호치민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84-8-3911-0225 eyang@yulchon.com
베트남Ⅱ	베트남 부동산·건설	지평지성	김상준 변희경 한승혁 김주현	지평지성 - 하노이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Vietnam 84-4-6266-1901 hanoi@js-horizon.com 지평지성 - 호치민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84-8-3910-7510 hcmc@js-horizon.com
캄보디아	캄보디아 회사 · 세무·투자	지평지성	이행규 유정훈	지평지성 - 캄보디아 (현지상호명:In 3 Horizon Attorneys at Law)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02-6200-0962(인터넷전화), 855-23-726-897(사무실) yoojh@js-horizon.com eak@js-horizon.com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카자흐 스탄·우즈베키 스탄 투자법제	율촌	이화준 문형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528-5200 mail@yulchon.com
미얀마	미얀마 투자법제	율촌	양은용 배용근 강수구 안우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대치동,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528-5200 mail@yulchon.com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투자법제	에이펙스	차지훈 이해왕	에이펙스 - 자카르타 CEO SUITE JAKARTA Wisma GKBI 39th Floor, Jl. Jend.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Indonesia Tel. 62-21-5799-8151 Internet Phone. 070-8230-6033 jhcha@apexlaw.co.kr, hwlee@apexlaw.co.kr

저 자 약 력

양은용 변호사

학 력

2004. 미국 UCLA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LL.M.)
1997.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 력

200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2007~현재. 율촌 베트남 법인 대표
2007~현재. 재단법인 서울시 복지재단 이사
2004~2005. Allen & Overy 홍콩지사 파견근무
1997~2000. 육군 법무관

배용근 변호사

학 력

2011.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LL.M.)
200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2005. 미국 UC San Diego Business Academy Course 수료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 력

2007~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2007~2008.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연수원 강사
2006~2007. Asia Law 2006 및 2007에 Finance-Specialized Lawyer로 소개
2003.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강사
2003~2007. 법무법인 세화 금융팀장

저 자 약 력

강수구 변호사

학 력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경 력

2008~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2007~2008. 법무법인 세화 변호사

안우진 변호사

학 력

2007. 듀크대학교 로스쿨 (J.D.)
199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 력

2008~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2007~2008. 채드본앤드파크
2000~2004. KT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Investment &
Business Guide

인 쇄	2013년 1월
발 행	2013년 1월
발 행 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 화	02) 2110-3661
팩 스	02) 504-1378
전자우편	ildhd@moj.go.kr
인 쇄	에이앤에프커뮤니케이션(주)
	02) 756-5171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761-01